

| SRI-정책-2022-02 |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Public Building Architectural Planning in Suwon

안국진, 황원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황원실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

곽호필(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방재성(건축도시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심경미(건축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육근형(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장)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7월 31일

발행 2022년 7월 31일

ISBN 979-11-6819-061-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000. 2022.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 내용

-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기획 대상 정립,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확립을 통한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기반 조성 등 체계적 정책방안을 마련
- 수원시 공공건축의 현황 파악과 정책수요 조사, 국내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도출

■ 정책제안

- ① (건축기획 대상 정립) 공공건축 기획 대상·기준·발굴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기획의 예산 및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
 - 공공건축 기획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수행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을 추정
 - 공공건축 기획의 우선 업무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구체화
 - 건축기획의 대가 기준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②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 총괄건축(계획)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
 - 총괄건축(계획)가의 임기, 경력, 주요 역할, 위상, 공공건축가와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
 - 공공건축가는 규모, 경력, 지역 건축가 비중, 선정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 방안을 구체화
 - 공공건축가의 임기, 주요 역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위원회 참여, 사업 수행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정

- ③ (건축기획 추진체계 구축) 공공건축 기획 전담 추진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유관 조직의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 방안을 도출
 - 건축기획 전담 추진조직의 규모, 조직형태, 인력의 고용형태, 업무범위 등을 상세화
 - 기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제시
 -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

- ④ (건축기획 추진기반 구축) 공공건축 기획 추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관련 조례의 개정과 추가적 내용에 대한 신규 조례 제정
 - 기존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기획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체계화
 - 이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공공건축기획 관련 추진사항은 (가칭)「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신규제정을 추진

국문요약



■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절차가 의무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20.1.16일부터)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의무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더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건축기획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용하여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의 체계적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

○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는 효과적이고 타당한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제안에 한정함

○ 연구의 방법

- 사례조사·분석 : 건축기획 추진방안 및 제도 관련 여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
- 정책수요 조사·분석 : 수원시 공무원과 건축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
- 전문가 자문 : 건축기획 정책 마련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지의 총괄건축가 및 추진조직원, 건축기획 연구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 건축기획 추진 사례조사

- 공공건축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우수 추진 사례지를 선별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주자치도, 당진시, 파주시 등을 중심으로 건축기획 추진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
-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공공건축 기획, 추진조직, 관련 제도적 기반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현황

- 2011년부터 2022년(3월)까지 수원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도, 발주기관, 계약금액, 계약방식, 공공건축물 용도 및 세부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과 제도 현황을 제시

○ 수원시 건축기획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과, 건축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민간 건축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은 전체 323명으로, 이중 공무원 223명과 건축가 100명으로 구성
- 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
- 설문지의 주용 내용은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 인식,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 추진 및 지원조직, 설계공모 등을 포괄

■ 결론 및 향후과제

○ 결론

- 정책수요 조사 결과, 수원시 공무원과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전체 과반이상(65.6%)이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수원시 건축기획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
- 수원시 건축기획의 추진 시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요확인을 통해 실행력 높은 세부 방안을 제시
-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총괄건축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과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
- 건축기획 대상·기준·발굴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기획 추진체계를 추진조직·유관조직 설치 및 운영·공정한 설계공모 운영 등으로 다각적으로 제시
- 이러한 세부방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제안

○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을 위한 우선 방안의 식별과 다각적 정책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기획에서 나아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건축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이와 함께 공공건축심의, 건축기획 대가기준, 건축기획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 구축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필요

주제어: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 건축기획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건축기획 관련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조사	7
제1절 이론적 고찰	7
1. 건축기획의 개념	7
2. 관련 제도에서의 건축기획	9
제2절 국내 사례조사	11
1. 서울특별시	13
2. 제주특별자치도	24
3. 당진시	30
4. 파주시	35
5. 기타사례	40
제3장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및 정책수요	43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43
1. 수원시 공공건축물 현황	43
2.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49
3.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 현황	49
제2절 수원시 건축기획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56
1. 조사 개요	56
2. 주요 조사 결과	59
제4장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	77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 정책 개요	77
제2절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 :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확립	80

1. 총괄건축가 세부 운영	80
2.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82
제3절 건축기획의 대상 정립	87
1.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기준·발굴방안 마련	87
2. 공공건축 기획의 예산 및 대가기준	88
제4절 건축기획 추진체계 구축	91
1. 공공건축 기획 전담조직 구성	91
2. 유관조직 설치 및 운영 개선	91
3.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	93
제5절 건축기획 추진기반 조성	96
1. 상위법에 대한 검토	96
2.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추진 방향 · 97	
3. 기존 조례의 개정과 신규 조례 제정	98
제5장 결론	111
제1절 결론	111
제2절 향후과제	115

표 차례

〈표 2-1〉 건축기획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	7
〈표 2-2〉 건축기획의 내용(업무범위)	8
〈표 2-3〉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항목	10
〈표 2-4〉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지자체 현황	11
〈표 2-5〉 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	11
〈표 2-6〉 사례조사 주요 내용	12
〈표 2-7〉 서울시 건축기획 추진조직	22
〈표 2-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35
〈표 3-1〉 수원시 공공건축물 발주기관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43
〈표 3-2〉 수원시 공공건축물 연도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44
〈표 3-3〉 수원시 공공건축물 계약금액(설계비)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45
〈표 3-4〉 수원시 공공건축물 계약방식별 현황(2011년~2021년 3월)	45
〈표 3-5〉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발주기관 및 계약금액(설계비) 현황	46
〈표 3-6〉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현황	47
〈표 3-7〉 수원시 2021년 계약방식 현황	47
〈표 3-8〉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용도 및 세부사업 현황	48
〈표 3-9〉 도시PD제 자격기준	51
〈표 3-10〉 도시PD 구성 현황	52
〈표 3-11〉 도시PD 참여사업	53
〈표 3-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54
〈표 3-1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55
〈표 3-14〉 응답자 특성(수원시 공무원)	56
〈표 3-15〉 응답자 특성(건축가)	57
〈표 3-16〉 조사 내용	58
〈표 3-17〉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법제화 인지도	60
〈표 3-18〉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수행 주체	61
〈표 3-19〉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이외의 수행 주체	62

〈표 3-20〉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규모 고려)	63
〈표 3-21〉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설계비 기준 적정 수준)	63
〈표 3-22〉 공사비 규모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 대가 기준	64
〈표 3-23〉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64
〈표 3-24〉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	66
〈표 3-25〉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근무방식	67
〈표 3-26〉 공공건축가 모집시 수원지역 비중 의견	67
〈표 3-27〉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여 의견	68
〈표 3-28〉 (기획한) 공공건축가의 설계공모 심사 참여 의견	68
〈표 3-29〉 공공건축가의 직접 기획 후 설계 수행 의견	69
〈표 3-30〉 공공건축시 엔지니어링 단가의 총괄/공공건축가 적용	69
〈표 3-31〉 수원시의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70
〈표 3-32〉 공공건축 기획의 전담조직 필요성	70
〈표 3-33〉 전담조직의 적정 인력	71
〈표 3-34〉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	71
〈표 3-35〉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필요성	73
〈표 4-1〉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77
〈표 4-2〉 건축기획 업무수행 시 주된 어려움 (1+2순위)	78
〈표 4-3〉 수원시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78
〈표 4-4〉 공공건축 기획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79
〈표 4-5〉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와 필요인력	91
〈표 4-6〉 건축기획 업무수행 시 주된 어려움	94
〈표 4-7〉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	96
〈표 4-8〉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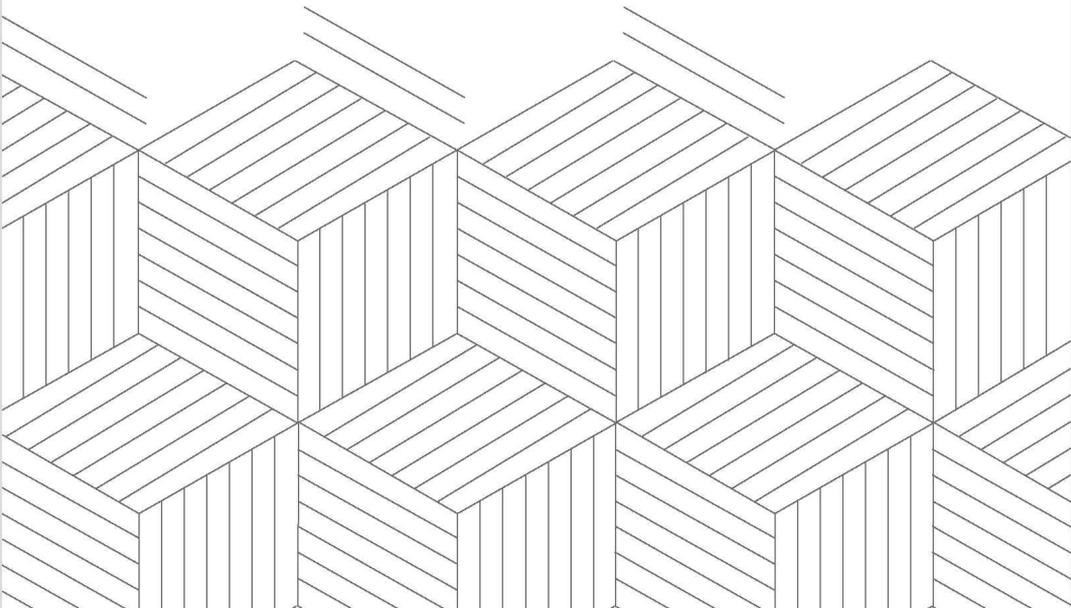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서울총괄건축가의 사업 기획, 자문의 진행 프로세스	13
〈그림 2-2〉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16
〈그림 2-3〉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17
〈그림 2-4〉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백서 현황	18
〈그림 2-5〉 “2021년 제주 공공성지도: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	26
〈그림 2-6〉 “공공성지도 2022: 견고 싶은 도시공간 만들기”	26
〈그림 2-7〉 제주도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회의자료	28
〈그림 2-8〉 제주도청 내 공공건축팀	29
〈그림 2-9〉 당진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34
〈그림 2-10〉 파주시 공공건축 추진조직	39
〈그림 3-1〉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49
〈그림 3-2〉 ‘공공건축 기획’ 정의 인지도	59
〈그림 3-3〉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법제화 인지도	60
〈그림 3-4〉 공공건축물 사업초기 검토 우선사항	61
〈그림 3-5〉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이외의 수행 주체	62
〈그림 3-6〉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64
〈그림 3-7〉 총괄건축가의 주요 업무	65
〈그림 3-8〉 총괄건축가의 적정 처우	66
〈그림 3-9〉 수원시의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70
〈그림 3-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	72
〈그림 3-11〉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필요성	73
〈그림 3-12〉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의 우선 개선사항	74
〈그림 4-1〉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 정책 개요	79
〈그림 4-2〉 총괄건축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	82
〈그림 4-3〉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	84
〈그림 4-4〉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86

〈그림 4-5〉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 정립	90
〈그림 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	92
〈그림 4-7〉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체계 관련 세부 방안	95
〈그림 5-1〉 총괄건축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	111
〈그림 5-2〉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	112
〈그림 5-3〉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112
〈그림 5-4〉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 정립	113
〈그림 5-5〉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체계 관련 세부 방안	11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 절차가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기획 업무란 법 제2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서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전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더해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 용역 입찰공고 전에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20.1.16일부터)인 공공건축 사업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의무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더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건축기획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용하여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의 체계적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정에 적합한 건축기획의 범위, 민간전문가 참여, 추진조직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효과적이고 타당한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 방안의 제안에 한정한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 관련 국내 사례, 정책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도 병행한다.

2. 연구의 방법

■ 사례조사

국내 우수추진 사례지를 추천 받아, 서울광역시, 제주자치도, 당진시, 파주시 등의 건축기획 추진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공공건축 기획 대상, 추진조직, 관련 제도적 기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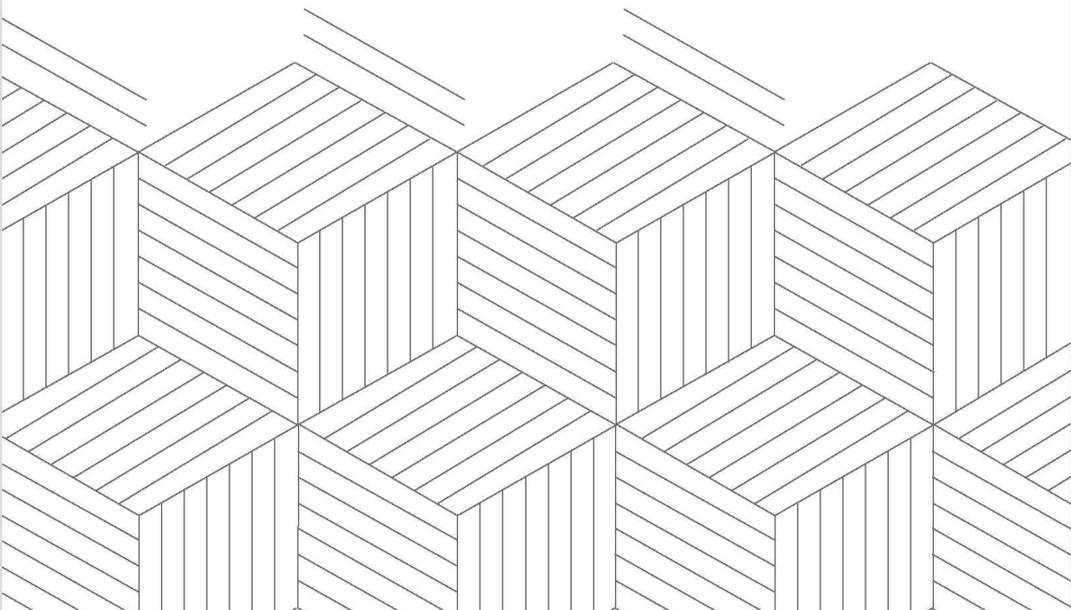
사례조사 과정에서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구축 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공공건축 기획 대상, 추진조직, 관련 제도적 기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추출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 정책수요 조사

정책수요조사의 경우, 공무원 223명과 건축가 100명 등 전체 32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 인식,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 추진 및 지원조직, 설계공모 등을 중심으로 정책수요를 구체화 한다.

제2장 건축기획 관련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조사

제1절 이론적 고찰
제2절 국내 사례조사



제2장 건축기획 관련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조사

제1절 이론적 고찰

1. 건축기획의 개념

‘기획’은 “일을 피하여 계획함”¹⁾이란 사전적 의미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기획은 “건축주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가 이외의 전문가와 협의하며, 법률적·기술적·경제적인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는 일”²⁾을 사전적으로 의미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건축기획은 사업기획(경제적 부문)과 설계기획(건축적 부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 건축기획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

건축기획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	
강미선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을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정의 - 건축주는 입지·대지의 요건, 사회·경제 환경·수요요건 등으로부터 다야한 구상을 마련하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발방향을 설정. 그 다음 과정으로 건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건축요건을 마련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
박일우 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을 건축설계의 전 단계 업무이며, 건축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정의 - 구체적으로 건축기획에 대한 정의를 위한 프로젝트의 성격 및 방향 설정은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 - 거시적 접근방법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운영계획(project planning)업무로 구성되며, 이를 경제성 검토라 지칭 - 미시적 접근방법은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법론적·기술적 접근방식으로 이를 설계의 방향제시 및 설계조건 설정이라고 정의
정창무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이란 사업주체가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부조건에 근거하여 사업상 요구되는 건축에 관한 기본방침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 또는 그러한 여러 수단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설명

자료 : 박선환 외, 202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p.15~16. 재정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정의에 따른 건축기획의 내용(업무범위)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과 적정용도 및 규모설정, 수요조건 및 개발여건 등 분석을 비롯하여 대지분석, 설계기본방향 설정,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성과 스키메틱디자인, 그리고 사업 관리계획까지 포함된다.³⁾

〈표 2-2〉 건축기획의 내용(업무범위)

	건축기획의 내용(업무범위) 관련 선행연구
강미선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분석틀을 경제적 부분과 건축적 부분으로 구성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의 진행을 개발개념의 초기화단계, 설정단계, 설계화단계, 확인단계로 정리하여 분석과정틀을 조합하고, 그 과정 내에서 의사결정 도구를 삽입시켜 구성하는 것을 제안 - 각 단계는 개발환경분석, 입지환경분석, 대지분석, 시장분석, 환경분석, 적정용도 및 규모설정, 디자인 개념설정, 재정모델 확립, 개발시나리오, 스키메틱디자인, 초기디자인 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
박일우 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접근방법인 경제성 검토에는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감정, 사업전략기획,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며, 미시적 접근방법인 설계의 방향제시 및 설계조건 설정에는 대지분석, 스페이스 프로그램, 시설계획, 건축프로그램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
임현성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을 넓은 의미로 '사업기획', 좁은 의미로 '설계기획'으로 구분가능하며 두 절차를 모두 포괄한다고 함 - 각각은 구상, 검증, 구체화의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업기획의 구상 단계는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설정, 검증 단계는 개발여건 분석 및 사업추진 여부 판단, 구체화 단계에서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함 - 설계기획의 구상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검증 단계는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분석, 구체화 단계에서는 설계 기본방향 설정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함
김은희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은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개 모두 방향 및 목표설정, 현장조사 및 분석, 유사사례조사, 사업규모 분석, 사업성 조사·분석 및 전략구상, 사업계획 및 관리, 행정업무의 항목으로 업무범위를 정리
일본건축학회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획이 총 2단계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함. 제1단계는 건축주·사업주가 건축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 건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으로, 입지·부지조건, 사회·환경조건, 수요조건 등에서 여러 가지 구상 및 이것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짐 - 제2단계는 설정된 목표의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세우리 위한 건축조적으로 바꾸는 단계 *기획과정의 구성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음

자료 : 박선환 외, 202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p.19~20 재정리.

3) 박선환 외, 202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p.15~16. 재정리.



2. 관련 제도에서의 건축기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드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업의 추진과정에 다른 건축기획업무의 구분과 달리, 주요 항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건축기획업무 절차와 시기,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입지 및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공공성 구현 및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디자인 및 사업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이후의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20)의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에서는 건축기획 업무는 사업 기획과 설계기획 관점으로 구분하여 두 절차 모두를 포괄하여 제안하였다.

〈표 2-3〉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항목

	사업기획	설계기획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 사업의 필요성 검토,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설정, 건립 및 운영방식 결정, 사업비 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검토, 사업 기간 검토, 시설 운영 계획, 관계자 의견 수렴	-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차별화, 사업의 규모 및 주요기능설정, 사업비 규모 조정 및 확정, 사업기간 검토
입지 및 공간 계획에 관한 사항	- 입지결정, 대지현황조사, 에너지효율화계획, 기타시설계획	- 입지결정 확정, 대지현황조사, 기존유사건 물조사 비교, 배치계획, 공간계획
공공성 구현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 외부공간계획 및 공용공간의 개방, 지역 거점공간으로 역할, 지역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디자인 및 사업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체계, 민간전문가 활용, 설계발주 방식의 결정, 공사발주방식 등의 결정	-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의도구현 수행 방식, 기타용역 등 발주 방식 결정
건축기획 이후의 절차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박선환 외, 202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33

제2절 국내 사례조사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2021년 6월 현재 전체 49곳으로, 광역 11곳, 기초 38곳 등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대전, 경남, 충남, 울산, 전북, 광주, 전남, 부산, 제주, 인천 등 11곳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강동, 서초), 경기(수원, 성남, 부천, 남양주, 시흥, 용인, 파주, 양주, 포천), 대전(서), 부산(부산진), 인천(서, 계양) 등 39곳이다.

〈표 2-4〉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지자체 현황

	지자체 수	지자체 명
광역	11곳	- 서울, 대전, 경남, 충남, 울산, 전북, 광주, 전남, 부산, 제주, 인천
기초	38곳	- 서울-강동/서초(2곳), 경기-수원/성남/부천/남양주/시흥/용인/파주/양주/포천(9곳), 대전-서(1곳), 경남-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남해/하동/산청/함안/거창/합천(16곳), 충남-홍성/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6곳), 전남-순천(1곳), 부산-부산진(1곳), 인천-서/계양(2곳)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https://www.npbc.or.kr/>) 내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재정리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조직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8곳으로, 서울, 충남,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 등이 포함된다. 2020년 2월 24일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를 필두로, 서울시교육청(2020년 3월 24일), 충남(2020년 5월 26일), 부산(2020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2020년 10월 23일), 대구시교육청(2021년 6월 23일), 경기도(2021년 7월 29일), 경상남도(2021년 9월 16일) 등이 순차적으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표 2-5〉 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

명칭	인가일자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	2020.02.24.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0.03.24.
충남 공공건축지원센터	2020.05.26.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	2020.06.19.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0.10.23.
대구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1.06.23.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2021.07.29.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2021.09.16.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https://www.npbc.or.kr/>) 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

이러한 여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에서 2022년 2월 현재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지로 서울광역시, 제주자치도, 당진시, 파주시 등이 추천되어,⁴⁾ 이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공공건축 기획, 추진조직, 관련 제도적 기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6〉 사례조사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민간전문가 제도	총괄건축가	근무형태
		경력
		중점 역할
		위상
		공공건축가와의 연계(운영)
	공공건축가	규모
		임기
		지역비중
		선정방식
		주요 역할
		공공건축가심의위원회
		설계공모위원회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회의체	사업수행
		운영 조직
규모		
운영주기		
공공건축 기획	주요 역할	
	연간 수행규 (신규,계속사업 포함)	
	수행대상 발굴 방법	
	기획사업 예산	
추진조직	기획대상 범위	
	위상	
	규모	
	업무범위	
자치조례	유관조직 운영	
자치조례	자치조례	
설계공모	설계공모 운영 방식	

4) 2022년 2월 23일 착수보고회

1.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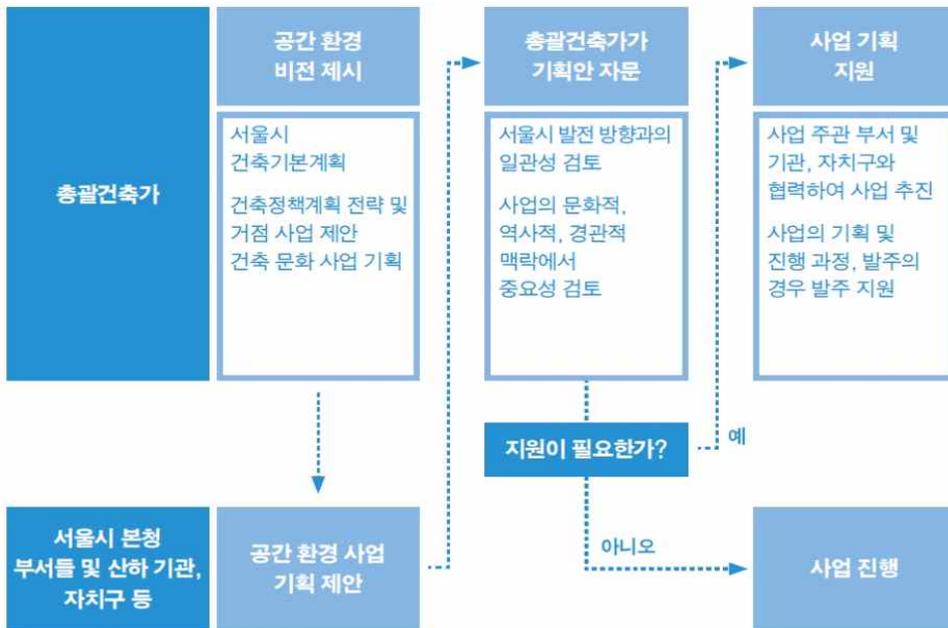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기획의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제도

서울특별시는 공공건축가를 2012년, 총괄건축가를 201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총괄건축가는 서울의 전략적 비전확립과 사업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진행되어 온 공간 환경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총괄건축가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지역적 균형에 맞춰 사업을 수행한다. 즉, 공간단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간계획, 도시계획, 개발계획에 있어서 시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2022년 현재 4대 총괄건축가가 제안한 대표 프로젝트로 서울시 수변 중심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지천 르네상스」가 추진 중이다.

- 2022년 현재 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2021.7.1. ~)
- 1대 서울총괄건축가 승효상(2014.9.18. ~ 2016.9.13.), 2대 서울총괄건축가 김영준(2016.10.6. ~ 2018.12.31.), 3대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희(2019.1.1. ~ 2020.5.27.)

〈그림 2-1〉 서울총괄건축가의 사업 기획, 자문의 진행 프로세스



자료: 서울시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7558>)

총괄건축가 제도의 법령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더해, 자체조례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 등) 등이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 등)

-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등 건축, 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건축가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며, 지위는 시장 직속 부시장급으로 건축정책위원장을 겸임한다.⁵⁾ 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비상근직으로 주 2일 근무한다. 수당은 정무부시장급으로 지급한다.

- 임명 및 지위 등
 - 임명 :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
 - 지위 : 시장 직속 부시장급, 건축정책위원장 겸임 (시장방침-건축기획과 2014.5.)
 - 프로젝트 및 안건에 따라 각 부서들과 협력관계 구축, 각 부서의 공공건축물 사업의 자문 등 협업체계로 운영 중임
- 근무방식 및 보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관련규정 마련(2015.5.14.)
 - 근무방식 : 임기 2년(연임가능), 비상근직, 주2일 근무(매주 화, 금/일정조정 가능)
 - 수당지급기준 :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 '19년 정무부시장급으로 상향 지급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마련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2012년 최초 77명의 공공건축가로 시작되어, 2021년 현재 181명으로 확대되었다.⁶⁾

공공건축가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2016.6.23. 시행)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공개공모에 의해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

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0.7.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안내”, p.23.

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9299>) 내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구성은 신진건축가, 중진건축가, 총괄계획가로 구성된다. 공공건축가 수당지급은 자문수당은 10~15만 원, 설계공모 운영(공공건축관리자)는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라 38만 원 정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2016.6.23. 시행)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업무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와 공공건축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력하고자 하는 약속을 담고자 한다.

제2조 (정의)

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란 서울 도시건축문화의 수준향상과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환경 및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가로서의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축가 중 일정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 ① 공공건축가는 서울특별시 공개공모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하며,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여 선정한다.
 - 가. 신진건축가 : 선정 당시 만45세 이하의 건축가로서 서울시의 신진건축가 육성의 시책 중 하나로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 나. 중진건축가 : 선정 당시 만45세 초과와 건축가로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도시건축의 기획 및 설계 능력이 우수한 자를 의미한다.
 - 다. 총괄계획가(MP) :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조정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상호역할)

- ① 공공건축가는 도시건축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관련 행정영역에서 서울시를 도와주는 자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사업별 공공건축가 추천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 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 나.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 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의 자문
 - 마. 기타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참여
- ②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 서울시 내부 방침에 의해 구성한다.
- ③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노력한다.
 - 가.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리뷰(출판·전시·간담회·워크샵 등)를 실시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
 - 나. 공공건축가 및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건축가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의무)

공공건축가와 서울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① 공공건축가는 본연의 업무인 설계·자문 및 정책 사업 등에 성심껏 참여해야 하며, 을시는 이를 통해 공공건축가의 위촉·연임·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를 활용한다.
- ② 공공건축가는 다음의 교육과정 사항에 대해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 가. 새로 위촉이 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등 서울시가 정해서 공고한 공건축가 필요 교육 및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 나. 서울시는 매년 공공건축가와 공유할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미나·교육 등 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다. 제2조에 정의된 공공건축가는 서울시가 마련한 강좌·워크샵 등 1년에 필요한 참여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필요한 의무 교육 시간은 서울시가 매년 공공건축가와 함께 립하도록 한다.
- ③ 공공건축가로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 참여 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 가. 공공건축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문 내용 결과 및 심사 의견서 등의 자료
- 나. 현상공모 참여 제출(안) 등
- ④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노력하고 준수한다.
- 가. 공공건축가의 자문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노력한다.
- 나. 공공건축가의 권리 증진 및 공공기여를 우대할 만한 각종 제도 등을 만들도록 한다.
- 제8조 (운영위원회)
- 시장은 공공건축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공공건축가 본인이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2015년부터 2016년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사업은 전체 442개로 지원시설, 주거·커뮤니티 시설, 문화공간, 아동센터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다. 주요 지원시설로는 고덕 119 안전 센터, 관악구 도시보건의소, 목동 보건지소, 도봉구민회관 외관 리모델링, 강남구보건소 외장 개선, 서울인재이모작지원센터 50+캠퍼스, 현충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이 있다. 주거·커뮤니티 시설로는 행촌공터3호점, 답십리 현대시장 고객센터,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포함되면, 문화공간으로는 공릉문화복합센터, 상계아트마당, 이화동 빈집 리모델링,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이 있다. 아동센터로는 구로구 향동어린이집, 구립 중곡1동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그림 2-2〉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7877?refresh>)

〈그림 2-3〉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7877?refresh>)

공공건축가 참여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백서’를 제작하여 기록화하고 있다. 2016년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2012-2015)”, 2017년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시키다(2015-2016)”, 2018년 “The SEOUL EXPERIMENT(2012-2016, 영문판)” 등 3권이 발행되었다.

1.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2012 - 2015
<http://ebook.seoul.go.kr/Viewer/Q9VCWHUES8UH>
2.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 시키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2015 - 2016
<http://ebook.seoul.go.kr/Viewer/O932UPZILHJ8>

〈그림 2-4〉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백서 현황



특히,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텍스트를 통한 열린 공모 지침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은 「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 지침서」가 있다.

「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 지침서」 주요 내용

○ 사업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재조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선도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도시공간 재창조 및 주택공급 혁신’을 서울 전역에 점차 확대하여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증산 혁신거점은 연희 혁신거점과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과 사인 및 색채(color code) 등이 연계되며, 추후 진행될 타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도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동질감과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의 내용은 공공주택과 함께 생활 SOC 등 도시적으로 주변을 포용하는 공공시설을 도입하여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도시의 단절을 회복하는 등 공공성 또한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공간 및 주택공급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도시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기에 본 사업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 사업의 이해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플랫폼 공간

- 독일 이론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론장'에 대한 정의를 본 사업의 중요한 공공공간 정의로 삼는다. 즉, '사적이며 개인적인 나 자신을 이 세상에 알리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나아가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장소)이자, 동등한 시민간의 관계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대의 장이다.' 또한, '공론장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양보를 공공의 이름으로 강요하지 않고, 공동체의 토론, 개인의 판단과 자발적인 선택에 의지한다. 이러한 공개 공간에서 시민은 평등한 발언권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수평적으로 동등한 공간'을 말한다.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도 '병든 소통은 병든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소통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든 공론장에서 어떤 소통을 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공공공간은 고정된 하드웨어로서의 공간이 아닌 유연하게 반응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플랫폼 공간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주거문화는 경험과 이벤트 그리고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노마드적 라이프스타일이 특징이다. 공간을 독점하고, 고비용을 지불하는 '소유'와 '전용' 개념보다 '공유'와 '연결'을 중시하는 성향을 띤다. 이런 주거문화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공간이 공간 복지의 첫 단추로 간주된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플랫폼 공간은 '서비스'와 '컨시어지'가 아닌 '환대'와 '교류'라는 인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성의 근본이고 시작점이다. 이들이 만드는 플랫폼 공간에서 문화란 팝업(Pop-up)적인 성격을 가진다. 자신의 남은 자원을 활용해 순식간에 공간의 용도를 전환하는 시도가 빈번하다. 더욱이 이 같은 '팝업'의 개념은 점차 도시적 개념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미 이들이 여기는 핫-플레이스에서는 주거와 상업이 뒤섞이고,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연주·연극·전시같은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따라서 본 사업은 주 거주자인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들이 만드는 팝업 생태계를 감안하여 '팝업 시티의 등장'을 중요한 계획의 목표로 삼는다.

혁신의 추구

본 사업은 청년임대 공동주택으로서 청년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의 제안을 요청한다. 청년 300인 정도가 한 건물에서 거주할 때 이들이 공유하고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경제적 장치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청년의 주거 방식을 고려한다면, 각 세대별로 공간을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형식의

공유주택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짧게는 일수에서 길게는 해수로 변하는 거주 기간을 고려한다면, 공유주택의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가? 공유주택에서 주거민을 위한 식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경제수단으로 삼는 시스템을 설정한다면 어떤 건축 공간이 필요한가? 본 사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사고와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본 사업의 혁신은 '사용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로부터 시작된다. 사용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길 바라며, 이로써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적응(용)과 예측',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공유'를 고려한 건축 프로그램을 추론하고 선정해야 한다. 즉, 본 공모의 참가자(팀)은 대상지의 거주자와 이들의 삶의 방식을 먼저 상정한 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찾고, 이를 구체적인 건축 프로그램에 연결해야 한다. 본 사업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시도를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공기, 빛물, 쓰레기 등을 정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등 오늘날 시대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건축을 요청한다. 또한, 본 사업은 인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수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건축적 조경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산출되는 생산물은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 주요 과제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주변여건 및 법규지침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 외 건축도시계획 관련법(공공주택특별법 등)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서울시 기준 및 제반규정(조례 포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계획의 전제

가. 지구계획범위: 증산 공공주택지구 6,912.5㎡

나. 시설계획범위: 행복주택 조성부지 5,609.1㎡

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라. 공공주택과 도시계획시설(빗물펌프장·도로)의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마. 지구 내 현황 차로는 유지하되, 공공주택 세대수 확보를 위한 방안 제안

바. 복합시설 계획을 위한 광장폐지(예정)

사.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제안 가능

아. 주차불허구간으로 지정(예정)

3)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취지의 이해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 제안

가.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의 취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기존의 공공주택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는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과 공간 프로그램 제안(예. 테라스가든, 루프탑바, 테라스수영장, 테라스주거, 공중정원 등)

나.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과 실 거주자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공프로그램과 그를 수용할 공간 계획 제안(예. 공유마켓, 농수산물마트, 공유워크센터, 브루어리, 체육관 등)

다. 저층부는 주로 공공프로그램으로 활용

라.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연결 방안 제안

4) 유의사항

가. 지구 내 현재 운영 중인 빗물펌프장을 유지하며 공공주택 복합계획

나. 계획 시설은 지하철도 구조물로부터 최소 0.5m 이상 이격 준수

※ 최대한 이격하여 경제적 설계로 과도한 지하구조 보강을 지양

다. 기타 지하지장물(하수전력관로 등) 상부에 계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조검토, 지장물 이설 및 유지보수 등 대안을 제시

라. 수색·DMC역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상 계획된 중(국) 2-2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계획 수립

마. 빗물펌프장의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제안

바. 펌프장 주변에는 주거 외 시설(지역편의시설 등) 설치로 소음·진동 최소화

사. 주변 도로 및 지하철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아. 기타 지하지장물 상부에 계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조적 해결방안, 지장물 유지보수 방안, 지장물 이설계획 등 대안을 제시

자. 빗물펌프장 및 지역편의시설은 향후 공동주택과 별도로 관리운영해야하는 독립시설로서, 공동주택과의 공간적 경계(면적구분)를 명백히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른 관리구분 및 별도의 진출입 동선이 명확하도록 계획

차. 사생활보호·방법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

카. 지하지장물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최소화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획

○ 주요 과제의 방향

본 공모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본 사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삼는다. 본 사업에서의 혁신의 범위는 사업기획(거주자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경제 모델을 포함하는 건축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주거, 지역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건축적 수준, 새로운 건축 공법과 재료(에너지 순환, 새로운 건축재료의 발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등), 친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건물 사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공공공간의 열림과 도시 문맥상의 조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공모의 참가자(팀)는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설계 공모 과정부터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각 전문가가 건설과정과 건물의 유지관리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결

대상지는 「증산지하차도」를 경계로 불광천과 면하고 있다. 불광천은 음암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연결된 수변공간으로 시민의 이용률이 활발한 도시 수변 공간이다. 본 공모의 참가자(팀)은 수변 공간 - 대상지 -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연결시켜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변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뉴커뮤터(New-Commuter)와 환승주거(Transit-living)

교외 통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청라, 일산, 고양, 운정, 영종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중교통 결절점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출입구(1번 출구)와 면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외 통근자 라이프사이클(life-cycle) 혹은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안을 요구한다.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청년(또는 현대인)들의 거주 속성을 고려하여 잠시 머무르는 개념의

일시적 거주방식에 대한 제안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철 환승체계와 결합된 새로운 거주방식에 대한 혁신적 제안을 요구한다.

친환경(ECO - ENVIRONMENT)영역과 기술

지붕 및 벽면 녹화, 녹화를 통해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의 순환과 친환경 건축재료, 옥상 정원 및 텃밭 조성과 친환경 순환시스템을 통한 우수집정장치, 태양열 시스템, 친환경 공법(추후 확장가능한 방식의 구조체 선시공 + 후차적으로 공간 확장, 슬라브 구조체 + 서비스 코어를 통한 대규모 공간 선시공 + 모듈화된 가구 및 건축요소를 통한 가변적 공간 수정)과 생물 다양성의 구현(채소·열매류·화훼류·향초류 재배, 녹조·이끼·곤충·지렁이류를 통한 토양의 친환경화)을 활용한 공기정화(산소공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례로, 옥상 농업공간에서 재배된 작물이 요리되어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르는 순환 과정이 단일 건물에서 주민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최근 크게 인식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 커뮤니티 연대(SOCIAL COMMUNITY SOLIDARITY)로서의 복합체

거주민인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적 복합체에 대한 제안을 요구한다. 복합체는 이질적 프로그램들 간 이점을 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이 촉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혼합하는 문화적 용광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일례로, 건물 내 공공-공유시설(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옥상농장, 테라스, 카페나 레스토랑 등을 배치하여 건물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옥상농장의 생산물 공유 및 판매시설(지상 혹은 지하 1층)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간적 융통성

예컨대, 공간적 융통성을 위해 모듈화된 구조체를 선시공하며, 필요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미래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대규모 건축물을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요구되는 조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의 가변성을 고려해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 하층부에 다목적 공간을 두어 건물 내 거주자 및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공간적 융통성을 주호 내에도 적용해 모듈화된 침실 또는 가구를 계획하고 이를 재조합해 다양한 쓰임새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본 사업은 현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포용한다. 일례로 생산 장소는 곧 소비 장소로 일원화될 수 있다. '생산(생산) - 사용 - 소멸 - 재생산' 순환시스템의 구성 등은 좋은 사례로 삼을 만하다. 또한, '거주 - 노동 - 생산 - 수확 - 이동 - 휴식'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이 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거와 임시숙박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체류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즉, 거주 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중장기 거주용 주택, 하이브리드식 호텔(단기체류의 단독여행객, 그룹단위의 여행객, 지역주민 등) 등 임대 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주거의 형태에 있어서도 1인용 전용 세대와 5~10인용 공유세대 등 다양한 대안을 제공해 거주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공유 공간 역시 더욱 크고 풍성해져 사용자로 하여금 공유공간에서의

거주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도시생산주체의 융합

본 사업에서 드러나는 도시공간은 건축가, 도시계획가가 이끄는 실험의 장으로서의 공간을 넘어 도시 안의 다양한 주체들의 융합적 협의를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 즉, 본 사업은 도시 생산주체들의 새로운 연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참가자(팀)은 건축가(참가자격 항목 참고)를 팀의 1인 대표자로 선정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민 주체, 거주민 주체, 조경전문가, 예술가, 친환경 전문가, 도시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팀 구성은 프로젝트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전 단계에 걸쳐 고려될 수 있다. (예: 대표 건축가 1인 + 조경 전문가, 친환경 전문가, 도시농업전문가, 디자이너, 학자, 스타트업 주체, 유통 전문가, 시공전문가, 지역 커뮤니티 대표, 도시예술 활동가, 청년네트워크 활동가 등)

2)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건축 기획 업무는 주택정책실 내 도시공간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조직 내에서도 공공건축정책센터가 공공기획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외 부분적으로 도시공간정책팀과 도시공간기획팀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제도 지원을 분담하고 있다.

추진조직의 위상 관련, 서울시정 내 전체 조직의 공공건축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과 총괄건축가가 부시장 대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⁷⁾

〈표 2-7〉 서울시 건축기획 추진조직

	건축기획 관련 주요 업무	인력
도시공간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총괄) - 건축기본계획 수립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제도개선, 운영 - 공유재산 현황조사, 운영, 관리 	팀장 1인 포함 전체 7명
도시공간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마을건축가 제도 총괄 - 도시공간 기획업무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 소규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및 자치구 협의 - 사업 추진(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혁신, 시민생활공간 조성,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등) 	팀장 1인 포함 전체 6명
공공건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수련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별 시설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안전검토·설계공모 운영 	센터장 1인 포함 전체 7명

7) 2022년 4월 15일 도시공간기획과장 인터뷰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 2월 24일 개소하였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전체 7명이며, 모두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일반직보다는 임기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⁸⁾

■ 공공건축기획 대상의 기준, 식별방법, 규모⁹⁾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 2월 24일 개소하여, 2020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86건과 공공건축 심의 52건 등을 추진¹⁰⁾하고, 공공건축기획 사업으로는 연간 10건 정도를 추진하였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편성 전에 시행한다. 심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실행한다.

공공건축 기획 사업은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주도로 연 2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간 1억5천만 원정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한다. 공공건축기획 사업은 공공건축가가 사무관리비 예산 내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개 정도의 기획과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며, 수행기간은 보통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더해 각 부서 의뢰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은 연간 20건 정도를 추진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관련, 기존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자 발주주체(운영부서)가 운영위원회를 각자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요청 시에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자체 공공건축 경험을 보유한 2부시장 산하 부서와 1부시장 산하 대부분 부서에서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공공건축 기획의 경우, 동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의 제도로 서울 시정 내 타부서에 대해 법정 과정임을 알리는 홍보나 정보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¹¹⁾

향후 서울시 공공건축 기획은 공공건축물 기획의 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 기획에 더해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건축물 기획까지 확대 예정이다. 2022년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공공건축 기획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8) 2022년 3월 30일 공공건축지원센터장, 4월 15일 도시공간기획과장 인터뷰

9) 2022년 3월 30일 공공건축지원센터장, 4월 15일 도시공간기획과장 인터뷰

1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2226>) 내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2022년 3월 30일 공공건축지원센터장, 4월 15일 도시공간기획과장 인터뷰

2. 제주특별자치도

3) 제주도 공공건축 기획의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제도

제주도는 2020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08년 4월부터 부서별로 공공건축물에 대해 입찰 발주를 하던 것을 도 건축지적과에서 통합관리하며 설계건축을 현상공모로 전환하였다. 도와 시의 모든 건축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요청하면 도 건축지적과에서 업무대행 방식으로 통합관리 하였다. 2020년도부터 건축지적과에서 민간전문가제도(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도입·지원 하였다.

제주도 민간전문가제도는 2022년 현재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45명으로 구성·추진 중이다. 총괄건축가로는 2022년 현재 3년차로 김용미 총괄건축가가 활동 중이다. 향후 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총괄건축가가 위원장을 겸할 예정이다.¹²⁾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며, 2022년 현재 인적구성은 지역건축가 비중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이외 40%정도가 서울 등 여타지역 건축가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45세 전 신진건축가 비중이 높다.¹³⁾ 공공건축가는 공공심의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개 모집 (2021년 12월 29일)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가. 모집분야 : 공공건축가(건축 · 도시계획 · 조경분야 전문가)
 - 나. 모집인원 : 공공건축가 45명
 - 지역구분 : 지역 전문가 50% 이상 선정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및 역할
 -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포함)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 ·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라. 지역의 개발 및 정비, 생활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 및 자문
 - 마.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12) 2022년 4월 5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13) 2022년 4월 5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기타 위의 내용에 상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또는 총괄·조정 등의 역량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가
- 5. 선발우대
 - 가. 정비계획 수립 및 단지설계, 총괄계획가(MP, 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참여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실적 여부
 - 다. 건축·도시·조경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최근 10년 이내)
 - 김수근 건축상, 젊은 건축가상, 환경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자, 대한민국 신진건축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도 건축상 등
 - 라. 국제현상공모 수상 실적이 있는 사람
 - 마. 기타 관련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부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외 개별 자문은 자문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기획과제의 경우 난이도(A/B/C)에 따른 380만 원~550만 원의 기획비 책정·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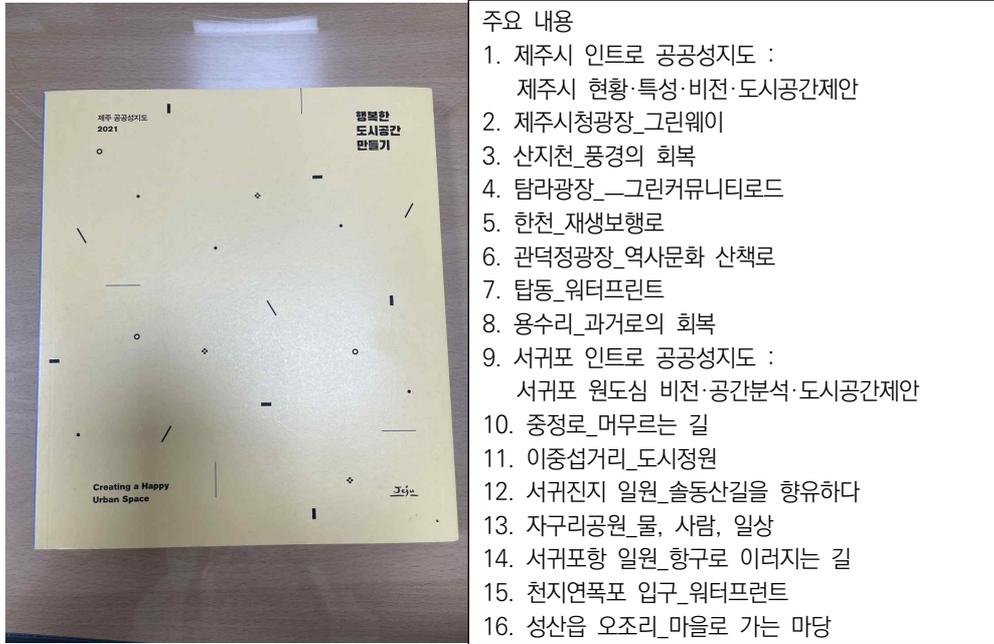
■ **도정 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안착을 위한 단계적 노력 :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¹⁴⁾**

2020년 제주 전 지역 공공건축 수요 발굴(문제점)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하였다.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출신 공공건축가를 배정하고,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공공건축물 5건 정도를 발굴하여 발표하였고, 이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제주 공간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제주도청과 담당조직(도시디자인담당관)과도 공유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제주읍성 개발 등)와 이에 대한 대안을 담은 ‘공공성지도 1’을 작성·전시하였다.

‘공공성지도 1’은 14명의 제주 출신 공공건축가가 인구감소·건축물 노후화·공동화 현상 가속화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사업은 공공건축가 1인당 550만 원 정도의 소규모 기획과제로 추진하였고, 전시와 담당 공공건축가 인터뷰를 제주방송에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14) 도정 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적 노력과 관련된 내용은 2022년 3월 31일 제주도 총괄건축가와의 인터뷰와 2022년 4월 5일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참관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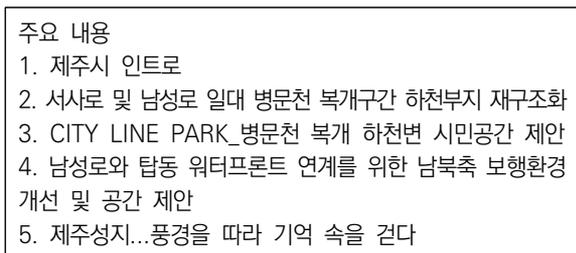
〈그림 2-5〉 “2021년 제주 공공성지도: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



2021년에는 걷고싶은 도시를 주제로 ‘공공성지도 2’를 제작하였다. ‘공공성지도 2’는 15명의 제주 출신 공공건축가가 답사와 토론을 통해 제주시 용담, 남성, 신산, 건입 4개 도시재생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로와 결절점의 환경개선과, 서귀포시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천지동에 집중하였다. 이에 더해 걷고싶은 도시 주제이외에도 특별히 ‘제주 5일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림, 세화, 고성, 중문 5일장을 매력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5명의 공공건축가가 참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책자로 자료화하고, 특별 기사로 언론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2022년 현재 국토부 공간환경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성지도 3’을 마련 중이다. 이는 매력있는 장소 찾기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그림 2-6〉 “공공성지도 2022: 걷고 싶은 도시공간 만들기”





6. 운주당터를 중심으로 역사경관 복원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제안
7. SUPPORTER LAND_새로운 배후지로서의 가능성
8. 서귀포시 인트로
9. 단절된 동네를 잇다_서문로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앞마당 재구조화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11. 중정로의 가로변 유휴공간 발굴과 활용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12. 동네공공시설을 활용한 저주환경 및 기존환경 개선안 구상
13. 풍경이 있는 오솔길_서귀로 천지동 일대 가로환경 구상
14. 제주 오일장 로드맵을 위한 인트로
15. 한림오일장_공유와 공존
16. 세화민속오일시장_SEHWAPUBLIC TERRACE
17. 고성오일장_오일장=매일공원
18. 중문오일장_지역문화를 담은 가변형 시장

이러한 공공성지도 작성과 전시·홍보 등 민간전문가제도의 인식 확산을 통해 관련부서의 자문, 공공건축기획 등 의뢰(수요)가 증대하였다. 공공건축 기획 추진은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를 통해 공공건축 기획 대상 선별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공공건축기획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공공건축기획 추진하고, 공공건축 기획 비용이 없을 경우 민간전문가 배정된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단위로 볼 때 제주도의 경우 15건 정도의 기획업무 의뢰 및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에서도 15건 정도의 기획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¹⁵⁾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는 총괄건축가, 기획분과장, 건축공간 분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획, 발굴, 실행방안 구상, 설계공모계획 수립·운영, 자문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월 4회 정도 주단위로 실시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는 기획분과, 도시분과, 건축공간 분(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장 1인과 분과원 각 5~7인으로 구성된다.

설계공모 운영과 관련해서,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 전반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 등을 지원할 설계공모 전문관(P.A. Professional Advisor,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내에서 선정)을 운영한다. 설계공모 전문관은 현상설계심사 위원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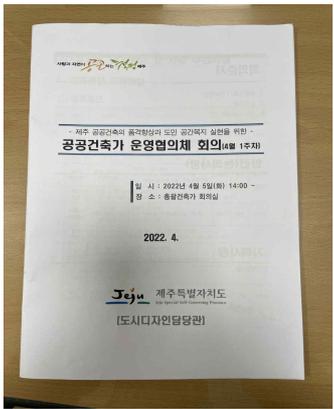
15)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2022년 3월 31일 제주도 총괄건축가와의 인터뷰와 2022년 4월 5일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참관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설명회와 심사 날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상설계심사위원 선정 관련, 동 협의체는 서울 건축가 100여명과 지역건축협회의 추천을 통한 제주 건축가 45명의 풀의 마련하고, 안전에 따라 5명에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현상설계심사위원은 전체 5명일 경우, 풀에서 선정한 서울 2명, 지역 2명과 공공건축가중 1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7명일 경우, 풀에서 선정한 서울 3명, 지역 3명과 공공건축가 중 1명으로 구성된다.

동 협의체 운영회의는 주 단위 추진내용이 정리된 문건과 자료발표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공건축가별로 지정된 사업별 설계공모 및 자문에 대한 내용 공유와 추진현안 토론, 추진사항 점검 등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현황과 설계용역 추진사항도 점검한다.

〈그림 2-7〉 제주도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회의자료

	<p>주요 내용 목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공모 추진현황 2. 설계공모 자문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자문 -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현황 - 설계용역 진행사항 - 교육청 설계용역 추진현황 3. 사업별 자문(일반)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추진 현황 - 공공건축가 기획설계 4. 사업별 자문(지역개발)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	--

4)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팀을 중심으로

2022년 현재 제주도청 내 추진조직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동 조직 내 ‘공공건축팀’이 공공건축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및 기준(안) 마련,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세스 매뉴얼 구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공공 건축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을 추진¹⁶⁾하고 있다.

16)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 내 ‘조직도’ 자료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적 기반 확립

202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통해서 제주도 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설계공모 의뢰,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제도화

2022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를 통해서 공공건축기획의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참여를 제도화

조직의 위상과 관련하여 공공건축 기획을 전담하는 공공건축팀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내 조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3개팀(공공건축팀, 디자인정책팀, 유니버설디자인팀)을 포괄하는 과 단위 규모의 행정부지사 직속 독립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 내 공공건축팀은 팀단위이기는 하지만, 여타 국이나 실에 소속된 팀조직보다 보고라인이 짧아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추진 용이성은 독립 담당관제라고 해서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시장과 시장의 공공기획 추진 의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¹⁷⁾

공공건축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건축직)이며, 경관심의분야를 담당하는 1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명이 공공건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건축가운영협의체 등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지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추진하는데 5~7명 정도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증원을 고려하고 있다.¹⁸⁾

〈그림 2-8〉 제주도청 내 공공건축팀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 기획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 사전심의제도’ 추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 기획을 위해서는 입지·규모 등을 개괄한 예산이 배정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예산부서, 회계부서, 공유재산 부서, 공공건축팀이 함께 분기별 공공건축 기획 관련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¹⁹⁾

17) 2022년 4월 5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18) 2022년 4월 5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19) 2022년 4월 5일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공공건축팀과의 인터뷰

3. 당진시

1) 당진시 공공건축 기획의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제도

당진시는 2019년부터 공공건축 기획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제도를 시작하였다. 이는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당진시가 선정되어 본격화되었다.

당진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는 2022년 현재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8명으로 구성·추진 중이다. 총괄건축가로는 2022년 현재 3년차로 차주영 총괄건축가가 활동 중이다.

총괄건축가의 주요 업무는 장소단위 마스터플랜의 총괄 및 자문, 타부서와의 협업 및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지섬 어촌뉴딜 300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구군청사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계점으로 여러 공간단위사업(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나, 각 추진부서별 개별 추진사항으로 진행되어 요청 시 자문역할 수행으로 역할이 한정적이다.²⁰⁾

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020년 ‘건축기본조례’의 제정으로, 보직 2년에 연임가능으로 제도화 되었다. 2022년 현재 총괄건축가는 주 2회(화요일과 수요일)로 비상근 근무하며, 공공건축가 1인의 업무지원을 받는다. 정례회의나 자문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부 민간전문가운영 지침에 따른 대가기준(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기술자)으로 지급 받는다. 2021년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전체 인건비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2022년 1억 2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다.²¹⁾

‘당진시 건축기본조례’(2020년 11월) 중

제11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연혁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추진단 자문대상에 대한 자문
2.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계자에 대한 교육
3.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0)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21) 2022년 4월 25일 공공건축팀 전화 인터뷰

공공건축가는 2022년 현재 8명으로, 이 중 2명은 지역건축가이다. 지역건축가의 참여는 지역적 특성을 공공기획 과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공공건축기획 업무에 숙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도 된다.²²⁾ 주요 업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사전검토서 작성 지원,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등이다.

‘당진시 건축기본조례’(2020년 11월) 중

제12조(공공건축가·분야별 전문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또는 장소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관리 및 자문하는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혁

② 공공건축가·분야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및 시공에 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분야별 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도시·디자인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시장 등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농어촌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020년 ‘건축기본조례’의 제정으로 보직 2년에 연임가능으로 제도화되었고, 정례회의와 자문회의 참석 등 필요시 근무하는 형태이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당진시의 경우 건축위원회가 대신 수행) 참여하지 않으며, 설계공모위원회에는 건축기획을 맡지 않은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²³⁾

당진시 설계공모위원회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설계공모가 진행되며, 공공건축팀에서 운영을 담당
설계공모위원회의 위원은 정례회의를 통해 사안별로 적합한 위원을 추천 받아 정해지며, 일부 설계공모위원회에 공공건축 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기도 함

공공건축가 임금은 정례회의 참석, 개별 프로젝트 자문 등에 대해 국토부 민간전문가운영 지침에 따른 대가기준(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고급기술자) 지급된다.

22)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23) 2022년 4월 25일 공공건축팀 전화 인터뷰

필요한 경우 개별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프로젝트를 공공건축가가 맡아서 추진한다. 건축기획 프로젝트의 내용은 수요조사, 타당성검토, 발주방식, 추진체계 구성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6~7백만 원 내외로 공공건축 추진부서에서 개별사업으로 발주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5건 정도가 추진되었다.²⁴⁾ 총괄건축가 인터뷰에서 과제수행 과정에서 특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가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²⁵⁾

사례: (당진) 신평사회복지관 건축기획 보고서 ²⁶⁾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당진시 현황, 계획의 범위,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
○ 사업여건 분석
- 사회복지관 정책동향, 당진시 현황분석, 설계시 고려사항
○ 도입시설 및 규모검토
- 유사사례 조사, 프로그램 설정, 세부시설 계획조적 체크, 프로그램 설정_특화, 시설 규모 검토
○ 기본구상
- 대상지 현황, 건축 개요, 배치계획, 기본구상(안)
○ 예산
- 사업비 선정, 사업비 산정(안)
○ 기타
- 향후 일정, 설계용역 발주 방식, 지속가능성 제공 방안, 법규검토, 사업관리체계(디자인 관리방안), 공공건축물 가치 향상 및 지역활성화 기여 방안

이외에도 공공건축가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설계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소규모 공공건축 시범사업에는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시의회 열린도서관, 왜목마을 관광센터, 삽교천 의용소방대 등이 포함된다.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정례회의 구성 및 운영²⁷⁾**

정례회의는 제도화된 회의는 아니지만 전체 공공건축 기획 과정을 조정 및 협의하는 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사업 선정, 개별 사업 담당 공공건축가 선정, 추진 내용 공유, 설계심사위원 추천 등을 진행하는 비공식 네트워크 회의이다.

총괄건축가와 전체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한다.

24) 2022년 4월 25일 공공건축팀 전화 인터뷰

25)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26) 당진시 공공건축팀, 2021. 08., “(당진) 신평사회복지관 건축기획 보고서” 내부자료

27)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 공공건축기획 대상의 기준, 식별방법, 규모²⁸⁾

당진시 공공건축 기획 대상은 기준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설계비 5천만 원 이상)의 신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한다.

이들 기획 대상의 식별을 위해서 건축과장이 연 초 예산서를 중심으로 10억 이상의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중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 대상사업을 한정한다. 건축기획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입지가 결정된 후 기획의뢰가 진행되어, 입지를 포괄한 최적의 공공건축 기획이 되기에는 제한적이다. 향후 최적의 공공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입지선정까지 공공건축기획 조직이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²⁹⁾

당진시 공공건축 기획의 연간 규모는 신규사업 4~5건 정도이며, 계속사업 포함하여 2022년 현재 전체 21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극히 일부 단순한 형태로 추진되는 건축기획이 필요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설계비 5천 억 원 이상 대부분 사업으로 볼 수 있다.³⁰⁾

2)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팀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당진시정 내 공공건축 전 단계를 담당하는 공공건축팀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은 민간전문가제도를 포함한 공공건축 기획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요소로 작용하였다.³¹⁾

공공건축팀의 인적 구성은 팀장 포함하여 6명으로, 전원 일반직 공무원이다. 분야별로는 건축직이 3명이며, 전기, 통신, 설비가 3명이다.

조직위상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공공건축팀은 2022년 현재 건축도시국 내 건축과에 속한 팀제 형태이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등 8개 과를 포괄하고 있다. 건축과는 건축정책팀, 공공건축팀, 주택팀, 도시디자인팀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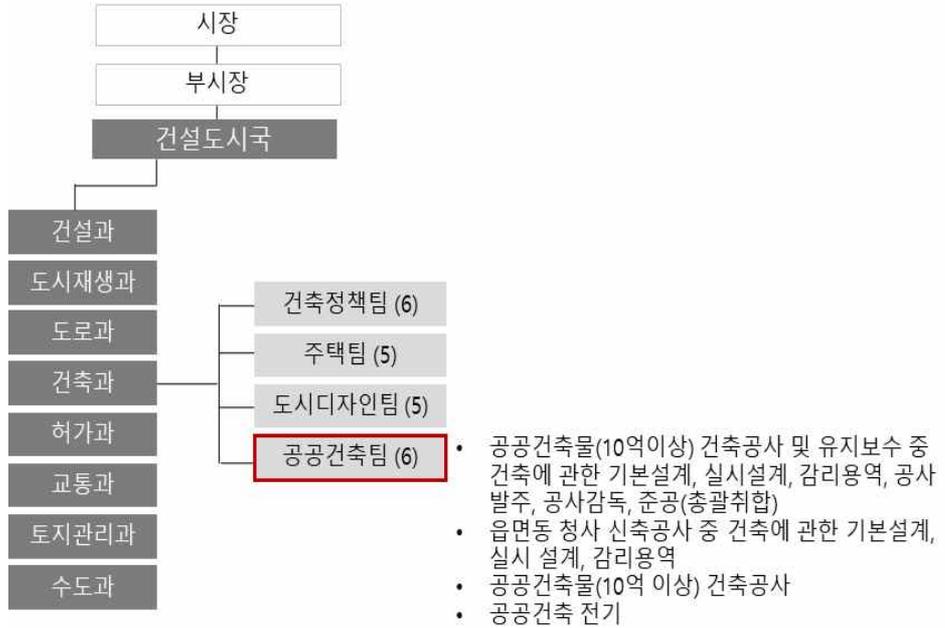
28)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29)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30) 2022년 4월 25일 공공건축팀 전화 인터뷰

31) 2022년 3월 8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등과의 인터뷰

〈그림 2-9〉 당진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4. 파주시

1) 파주시 공공건축 기획의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참여제도

파주시는 2019년 7월「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건축 기획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5월부터 예비총괄건축가(관련 조례제정 전)를 모시고 공공기획 체계 마련을 시작하였다.

파주시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공공건축 기획업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업무범위, 운영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표 2-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 2.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p>2. 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총괄·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8조(수당 등)	<p>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총괄건축가에는 2022년 현재 3년차인 이기옥 총괄건축가가 근무하고 있다. 총괄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총괄, 설계공모지침 검토, 현상설계 심사위원 풀(pool) 구성 지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³²⁾ 임기는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에 연임가능하며, 근무형태는 주 2회 정도 요일을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공공건축가는 2022년 현재 10명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의 제4조에 따라 용역 수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규모 설계나 기획과제 수행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중견건축가의 참여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³⁾ 공공건축가는 임기 2년에 연임가능하며, 자문이 있을 때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 공공건축기획 대상의 기준, 식별방법, 규모³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축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행정지원센터 등 3-4년 이상 소요되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다.

공공건축 대상의 식별 방법은 총괄건축가가 ‘시장주관 정책회의’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초기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할 수 있었다.

공공건축 기획의 연간 규모는 2022년 현재 전체 23개 추진 중으로, 18개는 기 추진하였고 5개는 추진예정이다.

32) 2022년 3월 17일 총괄건축가와의 인터뷰

33) 2022년 3월 17일 총괄건축가, 5월 2일 파주시 공공건축컨설팅추진단과의 인터뷰

34) 2022년 3월 17일 총괄건축가와의 인터뷰

■ 건축설계공모시스템 개선³⁵⁾

파주시는 공공건축 기획과 관련하여 특히 건축설계공모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공모 과정 전체 외주와 공모지침서 개편, 지역가점제 폐지, 현상설계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체계 재구축 등을 포함한다.

파주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건축사뉴스, 2021.09.17.)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혁신행정부분 최우수기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혁신행정부분 시상은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수상
민선7기 파주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제도 도입, 건축설계공모 시스템 개선, 공공건축건축컨립 프로세스 개선, 공공건축컨립추진단 구성 등에서 높이 평가

파주시는 설계공모 전체과정을 제3의 업체에 외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에서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등이 주축이 되어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기존 일률적이던 공모지침서가 개별 건물에 특화된 간략한 공모지침서로 개편되었다. 이에 더해 외주를 통해 공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참여율도 제고하고 있다.

지역가점제와 관련해서도 파주시는 지역업체나 지역과 외부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에 따른 가점제를 폐지하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권장사항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2021.8.1.)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역안배 없이 전국 심사위원 풀(pool)에서 경력 중심의 위원을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체계도 현장답사(오전)와 오후엔 숙의제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토론 후 1차 투표, 다시 토론 후 2차 투표로 진행하며, 투표 시 2~3개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다. 전체 과정에 담당 공무원도 심사에 함께 참여토록 하여 공공기획 관련 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료는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35) 2022년 3월 17일 총괄건축가, 5월 2일 파주시 공공건축컨립추진단과의 인터뷰

이러한 건축설계공모시스템 개선에 따라, 공모 참여자 수의 증대와 전국단위, 신진건축가 참여 증대 등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개선 전 평균 3~4건에서, 개선 후인 2019년 조리읍행정복지센터의 경우3건 접수에 33건 제출하였고 2020년 광탄도서관은 143건 접수에 72건 제출을 기록하였다. 기존 지역(특정 2~3곳 위주)이나 중진건축가 중심의 당선에서 신진건축가 당선 비중이 증가하였다.

2)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파주시정 내 추진조직은 사업소로 운영되는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이 있으며, 동 조직이 공공건축 기획업무와 건축발주, 감독 등 전과정을 담당한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은 14명이며³⁶⁾, 공공건축건립1팀과 공공건축건립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은 단장과 팀장을 제외하면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³⁷⁾

파주시 공공건축 기획 도입 배경 및 초기 추진조직³⁸⁾

토목직에서 추진하던 생태관 건립 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50% 이상 증대됨. 이에 시장의 재검토 지시와 영주시, 부산시 등 여타 지자체가 공공건축 기획을 추진하던 것을 선례로 파주시도 공공건축 기획을 본격 도입
공공건축기획 관련 별도의 독립된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이 꾸러지기 전에는 회계과 내 '청사건립TF팀'으로 출발 초기 구성원이 3명에서, 5명, 8명으로 증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진단도 구성

공공건축건립1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며, 공공건축기획 및 건립 종합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 파주시행정융합지원센터, 금촌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장단공웰빙마루조성, 파주시노인복지관부설주차장건립, 운정3동행정복지센터건립, 파주놀이구름외부공간조성, 운정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건립, 조리읍행정복지센터신축 등을 대상으로 공공건축건립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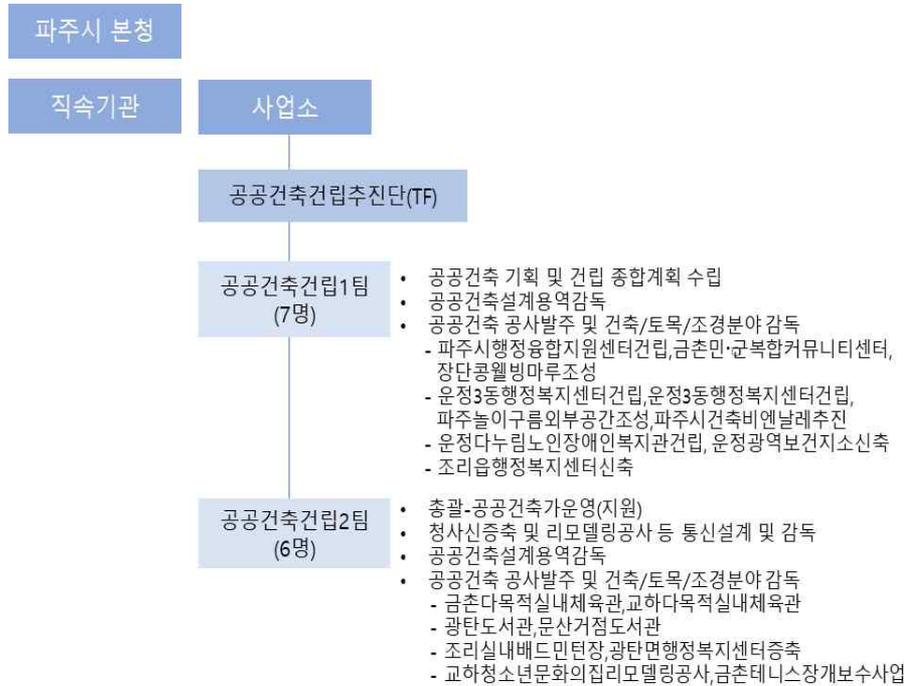
공공건축건립2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며, 공간환경 및 전략계획을 담당하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청사신·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교하청소녀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건축건립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6) 2022년 5월 2일 파주시 공공건축건립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인력 14명으로는 20억 이상에 사업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37) 2022년 5월 2일 파주시 공공건축건립추진단과의 인터뷰

38) 2022년 5월 2일 파주시 공공건축건립추진단과의 인터뷰

〈그림 2-10〉 파주시 공공건축 추진조직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은 공공건축 기획 운영에 있어서 시정 내 타 조직의 공공건축 기획 추진에 대한 인식변화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재생과 같은 유사 관련 조직은 공공기획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이외 여타 조직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추가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5. 기타 사례 :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경기도는 2022년 현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건축 기획을 전담하는 총괄조직은 부재하며 각 발주부서가 개별적으로 공공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전검토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시주택실 내 택지개발과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담당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도시주택실 내 건축디자인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1년 7월 경기도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로부터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개소하였고, 2021년 7월 센터 내 ‘경기도 지역 공공지원센터’ 지정·승인하였다.

동 센터는 ‘공공건설 사전검토’(공사비1억 원 이상 건축·토목·조경 등)와 ‘공공건축 사전검토’(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를 수행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117건을 검토하였다. 이중 신축은 신축 93건, 증축 16건, 이전 1건, 대수선 1건, 리모델링 6건 등이다. 발주방식별로는 일반설계공모 90건, 제안공모 21건, 입찰 4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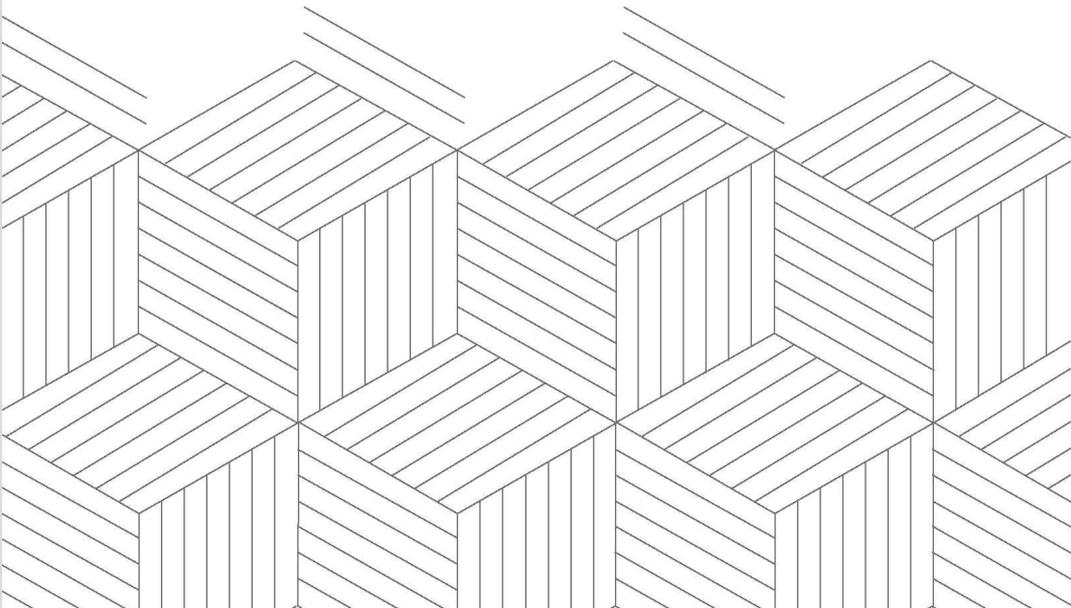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동 센터의 인력구성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략적으로 4명 정도 추정된다. 이는 공공건설과 공공건축으로 나누어 인력이 나뉘지 않으므로 업무량을 놓고 산정한 인력이다. 동 센터 전체의 운영비용은 연간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공공건축 사전검토는 2021년 8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접수 개시하였다. 신청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서류로는 사전검토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기획(기본계획)자료, 투자심사자료, 예산승인자료, 관련도면, 공사비 산출근거 등이다.

사전검토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전체 풀(pool)은 80여명이며, 1년 동안의 실질 운영을 통해 30여명의 핵심 인력을 선별·운영한다. 국토부 공공건축가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외부전문가는 검토안 1건당 1인의 외부전문가가 담당하여 운영한다. 종합검토의 경우, 외부전문가 1인이 보통 담당하며 1건 당 2~3일 정도가 소요되며 보수수준은 자체 방침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제3장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및 정책수요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제2절 수원시 건축기획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제3장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및 정책수요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관련 정책현황

1. 수원시 공공건축물 현황

2011년부터 2022년(3월)까지 수원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은 전체 265개³⁹⁾이다. 발주기관별로는 수원시 본청이 전체의 과반을 넘는 138개(5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선구청(24개), 영통구청(18개), 팔달구청(18개), 공원녹지사업소(16개), 화성사업소(15개) 등 순서를 나타냈다.

동 기간 동안 수원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축물이 184개로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이외 각 구청 및 보건소가 81개(30.6%)를 발주하였다. 수원시 소속기관으로는 공원녹지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석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사업관리소 등이 포함된다.

〈표 3-1〉 수원시 공공건축물 발주기관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발주부서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65	100.0			
본청	138	52.1	도서관사업소	11	4.2
권선구청	24	9.1	농업기술센터	3	1.1
영통구청	18	6.8	장안구보건소	3	1.1
팔달구청	18	6.8	권선구보건소	2	0.8
공원녹지사업소	16	6.0	영통구보건소	2	0.8
화성사업소	15	5.7	도로교통사업관리소	1	0.4
장안구청	13	4.9	팔달구보건소	1	0.4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음영은 본청 및 본청 소속기관

39)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의 공공건축물 계약현황 원자료는 공공건축물 분리발주에 따라 단일건축물도 건축, 토목, 전기 등이 개별로 존재하였다. 이를 단위 건축물별로 통합하여 공공건축물 기초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4개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3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18년(32개), 2016년과 2019년(28개), 2021년(27개) 등의 순서이다.

〈표 3-2〉 수원시 공공건축물 연도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발주부서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65	100.0			
2022년 (3월 현재)	6	2.3	2016년	28	10.6
2021년	27	10.2	2015년	24	9.1
2020년	20	7.5	2014년	14	5.3
2019년	28	10.6	2013년	36	13.6
2018년	32	12.1	2012년	21	7.9
2017년	20	7.5	2011년	9	3.4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계약금액별로는 공공건축물의 계약금액이 6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28개로 48.3%인 과반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68개), 3억 원 미만(65개) 등의 순서를 나타낸다.

금액설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공건축 공사비로 건축, 기계, 토지, 전기, 조경 등이 포함된 전체 비용이 산정되어야 하나, 현재 구득 가능한 계약금액에는 건축 및 기계를 중심으로 한 용역이 주를 차지한다. 건축비는 전체 공사비의 대략 60%를 차지하므로⁴⁰⁾, 이에 총 공사비 5억 원을 현재 자료 3억 원으로, 10억 원을 6억 원으로,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두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 300억 원(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타당성조사 대상이며, 계약비용 6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심의 대상이 된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설계비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공공건축심의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별로는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이긴 하나 공공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이 133개로 과반 이상(50.2%)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와 공공건축 심의 대상인 '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 90개(34.0%), 공공건축 심의 대상인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설계비 1억 원 미만'이 38개(14.3%) 등의 순서를 나타낸다.

40)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견으로 추정

〈표 3-3〉 수원시 공공건축물 계약금액(설계비)별 현황(2011년~2022년 3월)

계약금액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65	100.0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4	1.5
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12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90	34.0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설계비 1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38	14.3
설계비 5천만 원 미만 (6억 원 미만)	133	50.2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은 건축비 중심으로 산정된 금액, 설계비는 추정가격으로 총공사비의 5%로 산정

계약방식별로는 제한경쟁이 185개로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반경쟁이 48개, 수의계약이 30개로 나타났다. 제한경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제한이 전체의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 일정금액(일반 30억, 전문 등 3억, 실적,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등) 기준이 12.8%를 차지한다.

〈표 3-4〉 수원시 공공건축물 계약방식별 현황(2011년~2021년 3월)

계약방식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65	100.0
일반경쟁	48	18.1
제한경쟁	187	70.6(100.0)
	지역제한*	160 (85.6)
	일정금액	24 (12.8)
	기타	3 (1.6)
수의계약(소액수의)	30	11.3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지역제한 중 2건은 중소기업+지역제한, 1건은 지역제한+특수기술, 이외 157개는 지역제한임

제한경쟁 중 지역 제한

대상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81억 원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 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연 단위 공공건축물 발주현황을 분석을 위해 2021년 공공건축물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7개로 이중 본청 및 관련기관이 20개로 74.1%를 차지한다. 계약금액은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이 18개로 66.7%를 차지한다.

전체 공공건축물 중 신축이 19개로 70%이상이고, 나머지 8개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었다.

〈표 3-5〉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발주기관 및 계약금액(설계비) 현황

발주부서	공공 건축물(개)	공공 건축물(%)	계약금액	공공 건축물(개)	공공 건축물(%)
전체	27	100.0	전체	27	100.0
본청	16	59.3	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12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	22.2
화성사업소	2	7.4			
공원녹지사업소	2	7.4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설계비 1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3	11.1
권선구	4	14.8			
영통구	2	7.4	설계비 5천만 원 미만 (6억 원 미만)	18	66.7
팔달구	1	3.7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표 3-6〉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현황

신축/리모델링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7	100.0
신축	19	70.4
리모델링	8	29.6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계약방식별로는 제한경쟁 전체 과반 이상인 55.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소액수의계약이 40.7%, 일반경쟁 3.7% 등으로 나타났다. 제한경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제한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7〉 수원시 2021년 계약방식 현황

계약방식	공공건축물(개)	공공건축물(%)
전체	27	100.0
일반경쟁	1	3.7
제한경쟁	15	55.6(100.0)
	지역제한*	12 (80.0)
	일정금액	1 (6.7)
	기타	2 (13.3)
수의계약(소액수의)	11	40.7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지역제한 중 1건은 지역제한+특수기술, 이외 11개는 지역제한임

용도별로는 청사, 복지센터, 거점센터 등과 같은 업무 및 교류시설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놀이터, 공원, 공원 내화장실 등 공원 및 조경이 22.2%를 차지한다.

〈표 3-8〉 수원시 2021년 공공건축물 용도 및 세부사업 현황

용도	공공건축물 (개)	공공건축물 (%)	세부사업 내역
전체	27	100.0	
업무 및 교류시설	9	33.3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청사)(건축, 기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 공사(건축) -행궁사랑채 조성공사(건축) -고등동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공사(건축) -교동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공사(건축)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공사(건축) -구천동공구시장 고객센터 건립공사(건축) -골목상권 교류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매산로1가 114-19번지 일원 거점공간 조성 공사(건축)
공원 및 조경	6	22.2	-미소어린이공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효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고령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건축, 토목, 기계) -산울림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건축, 토목, 기계) -수원수목원 조성공사(조경, 건축) -인계3호공원(3단계) 조성사업
주차시설 및 보도	5	18.5	-수원역 지하도상가 보행환경개선공사(건축)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축) -서부버스공영차고지 정비동 확장 신설공사(건축) -파장동 맛고을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원시 차이나타운 안심환경 조성 공사
보육 및 교육시설	2	7.4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체육 및 문화시설	2	7.4	-영통체육문화센터 개보수공사(건축)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
복지시설	1	3.7	-세류2동 현대경로당 신축공사(건축, 기계)
기타	1	3.7	-재해구호물자 등 재난관리자원 보관창고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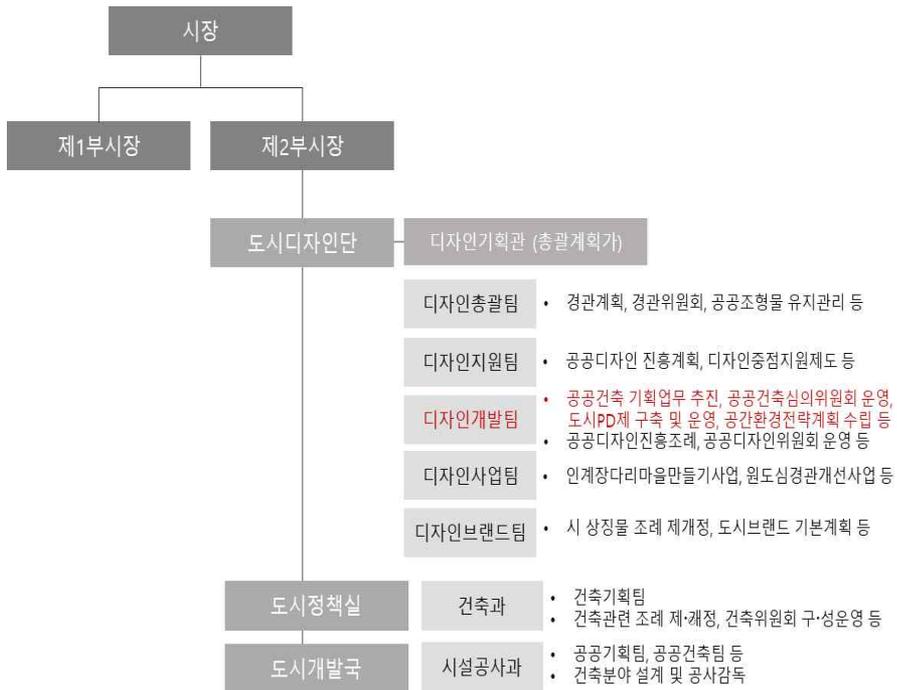
자료 : 수원시(2022년 3월) 회계과 내부자료 재정리-

2.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2022년 현재 수원시는 도시디자인단에서 공공건축 기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디자인단 내에는 디자인기획관이 총괄계획가로 상근하고 있으며, 디자인개발팀 내 팀장 1인과 담당 주무관 1인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공건축 기획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도시PD제 구축 및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다.

이외 공공기획 추진과 연관된 조직으로는 건축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실 내 건축과가 있으며, 공공건축 설계 및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도시개발국 내 시설공사가가 있다.

〈그림 3-1〉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 관련 추진조직



3.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 관련 제도 현황

1) 수원시 공공건축기획의 민간전문가 참여 : 도시PD제와 디자인기획관 운영

수원시는 도시PD(Project Director)제를 2020년 8월부터 운영하였다. 도시PD(Project Director)는 공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획 및 아이디어 도출, 사업비 집행계획 등 디자인 활동과 행정절차를 전담하여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⁴¹⁾ 주요 업무 및 역할로는 수원

시 공공사업 관련 기획 또는 설계에 대한 자문·조정, 소규모 공공사업 설계 참여, 공공사업 전과정에 걸쳐 사업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자문·조정을 담당한다. 도시PD는 공공건축가와 공공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도시PD 중 공공건축가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로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공공디자인진흥법 제16조(전문가의 참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이 있으며, 수원시 자치조례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공공디자인전문가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수원시 자치조례인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동 조례에서는 공공건축가와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포괄하여 민간전문가로 지칭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배치·형태·색채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획·설계하고 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전략계획"이란 도시디자인 개선·관리 방안을 모색 및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사업 행정체계"란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절차와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 관련 법령 또는 법정계획"이란 「건축기본법」,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및 그 계획을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다음 각 목의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 가. 공공건축가: 「건축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 수원시 주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과정을 총괄·조정
 - 나. 공공디자인 전문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위촉되는 전문가로 수원시 주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수행
6.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도시PD는 임기 1년으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된다. 도시PD는 도시설계·건축·도시경관·조경 분야의 공공건축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사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또는 조경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민간전문가 자격기준과도 일

41)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치한다.

이외 디자인분야의 경우, 자격기준보다는 경력기준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준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표 3-9〉 도시PD제 자격기준

	세부 내용
도시설계·건축·도시경관·조경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또는 조경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디자인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5호 공공디자인 전문이력에 관한 기준을 따름.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함을 판단할 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022년 현재 도시PD의 구성원은 전체 14명으로, 2년차로 1기 참여자들이 연임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9명이고, 여성이 5명이다. 소속 및 직위는 연구원과 대학교 교수 등 연구직이 3명이고 이외는 건축·설계·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은 수원 2명과 고양 1명을 제외한 11명이 서울이다.

〈표 3-10〉 도시PD 구성 현황

		성별	자격기준	최종학력	지역(직장)
1	공공건축가	남	건축사, 조교수	석사	경상남도 진주시
2	공공건축가	남	건축사	석사	서울시 송파구
3	공공건축가	남	도시계획기술사	석사	서울시 서초구
4	공공디자인 전문가	남	석사 후 6년 이상	석사	성남시 분당구
5	공공건축가	남	건축사	석사	서울시 강남구
6	공공건축가	남	건축사, 연구위원	박사	수원시 권선구
7	공공디자인 전문가	남	석사 후 8년 이상	석사	서울시 중구
8	공공디자인 전문가	여	석사 후 6년 이상	석사	고양시 일산동구
9	공공디자인 전문가	남	석사 후 11년 이상	석사	서울시 성동구
10	공공디자인 전문가	여	석사 후 6년 이상	석사	서울시 광진구
11	공공건축가	여	건축사	석사	서울시 성북구
12	공공디자인 전문가	여	조경기술사, 석사 후 18년 이상	석사	서울시 서초구
13	공공건축가	남	교수	석사	서울시 강남구
14	공공디자인 전문가	여	조교수, 박사 후 13년 이상	박사	서울시 송파구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도시PD 참여사업은 각 부서 수요조사와 신청에 의해 선정되며, 2022년 2월 현재 11개로 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 광장조성 및 경관개선,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건축분야의 지정 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 공공건축사업 중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지역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건축분야의 지정 대상은 ①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 공공건축사업(설계비 0.5억 원 이상), ② 지역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디자인관리가 필요한 사업, ③ 기타 관리가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설계비 0.5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등이다.

〈표 3-11〉 도시PD 참여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일
1	○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매산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참여종료] • 매산동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모두다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08.27.~'21.02.	'20.07.27.
2	○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	'19.07.~'23.01.	'20.08.05.
3	○ 원도심 경관개선사업 • 중동사거리 광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중동사거리 광장조성 사업	'20.08.25.~'21.07.22	'20.08.25.
4	○ 수원가정법원 일대 디자인개선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참여종료]	'20.11.23.~'21.06.21	'20.11.20.
5	○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MI) 개발	'20.12.~'21.06.	'20.12.03.
6	○ 2021. 상반기 공공브랜드 개선사업 • 사업 기획	'21.02.~'21.06.	'21.02.04.
7	○ 수원컨벤션센터 실내조경 조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21.08.~'21.09.	'21.08.25.
8	○ 수원시 공공브랜드(농산물·수원한옥) BI 개발 • 디자인 기획·구체화 자문	'21.09.~'22.03.	'21.09.24.
9	○ 이목지구 제52호 근린공원 내 도서관 신축공사 • 기획·기본·실시 설계 검토 및 자문	'21.11.~'25.06.	'21.10.20.
10	○ 수원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도시·건축·가로공간·도시재생 분야 기획 및 자문	'21.11.~'22.05.	'21.11.01.
11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조성사업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기획 및 실시 설계 지원 • 인가 및 시공관련 협의 지원	'21.11.~'23.12.	'21.11.22.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2)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0년 5월부터 설치·운영되었다. 설치 및 운영의 법률적 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며, 관련 자치조례는 부재하다.

동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설계공모 시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여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여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 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중에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	
-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동 위원회의 전체 위원은 9명으로, 위원장 1명에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맡고 있으며 수원시정내에서는 도시개발국장과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명이 여성이 4명이다.

〈표 3-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직위	성별	직업(현직위)	비고
1	위원장	남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2	위 원	남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당연직
3	위 원	여	대학교 부교수	위촉직
4	위 원	남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5	위 원	남	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직
6	위 원	여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7	위 원	남	대학교 교수	위촉직
8	위 원	여	대학교 조교수	위촉직
9	위 원	여	수원시 디자인기획관	위촉직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정	
○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으로 구분하여 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심의 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심사위원 심의수당 지급	
-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지급	
※ 2022년도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건이 개최되었다. 안건의 내용으로는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검토가 4건이고, 건축기획 적정성 심의가 1건이었다. 심의결과는 5건 모두 조건부의결로 심의되었다.

〈표 3-1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주요 안건		심의결과
1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	조건부의결
	건축기획 적정성 심의	교동 도시재생거점센터 건축공사	조건부의결
		고등동 도시재생거점센터 건축공사	조건부의결
2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연무동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3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4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5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세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 2022.01.11. "수원시 도시PD 2022년도 운영 계획"

제2절 수원시 건축기획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수원시 건축기획의 실태와 정책수요 도출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건축을 추진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 외부 민간부문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건축가를 중심으로 건축기획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체 323명이다. 수원시 공무원은 223명이고 건축가는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주요 특징으로는 수원시 공무원의 경우,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은 41명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182명으로 구성되었다. 건축가의 경우 건축경험이 있는 사람이 69명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3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14〉 응답자 특성(수원시 공무원)

		사례 수	%
전 체		(223)	100.0
성별	남자	(94)	42.2
	여자	(129)	57.8
연령대	20대 이하	(39)	17.5
	30대	(95)	42.6
	40대	(66)	29.6
	50대	(22)	9.9
	60대	(1)	0.4
소속	수원시정 내 1부시장 소속 조직	(85)	38.1
	수원시정 내 2부시장 소속 조직	(98)	43.9
	수원시 산하기관	(35)	15.7
	기타	(5)	2.2
건축기획 업무경험	있음	(41)	18.4
	없음	(182)	81.6

〈표 3-15〉 응답자 특성(건축가)

		사례 수	%
전 체		(100)	100.0
성별	남자	(50)	50.0
	여자	(50)	50.0
연령대	20대이하	(21)	21.0
	30대	(44)	44.0
	40대	(28)	28.0
	50대	(7)	7.0
건축기획 업무경험	있음	(69)	69.0
	없음	(31)	31.0

조사 내용은 크게 기초정보,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 추진 및 지원조직(체계), 설계공모로 구성된다.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는 공공건축 기획의 인지, 우선검토사항 및 주체,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괄건축가의 업무/임기/처우/근무방식, 공공건축가 지역비중/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여/설계수행, 공공건축 기획 및 민간전문가 대가기준 등이 포함된다.

추진 및 지원조직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인력규모.형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선사항,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표 3-16〉 조사 내용

	조사 내용
기초 정보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건축기획업무수행경험
	건축기획 업무수행 시 주된 어려움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공공건축 기획' 정의 인지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법제화 인지도
	공공건축물 사업초기 검토 우선사항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수행 주체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이외의 수행 주체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규모 고려)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설계비 기준 적정 수준)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총괄건축(계획)가의 주요 업무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처우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근무방식
	공공건축가 모집시 수원지역 비중 의견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여 의견
	(기획한) 공공건축가의 설계공모 심사 참여 의견
	공공건축가의 직접 기획 후 설계 수행 의견
	수원시의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공사비 규모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 대가 기준	
추진 및 지원조직(체계)	공공건축시 엔지니어링 단가의 총괄/공공건축가 적용
	공공건축 기획의 적절한 대가산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전담조직의 적정 인력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
설계공모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필요성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의 우선 개선사항

2. 주요 조사 결과⁴²⁾

1)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공공건축 기획’의 정의에 대한 인지 비율은 26.0%인 반면, 비인지 비율이 과반인 50.5%로 나타났다. 질문에서 ‘공공건축 기획’의 정의는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 전략을 수립” 것으로 하였다.

〈그림 3-2〉 ‘공공건축 기획’ 정의 인지도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이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 법제화 되었다는 다는 것에 대한 인지 비율은 앞선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인지 비율보다 더 낮은 12.4%로 나타났다. 건축경험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41.5%, 건축가는 26.1%의 인지율을 보였다.

42)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림 3-3〉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법제화 인지도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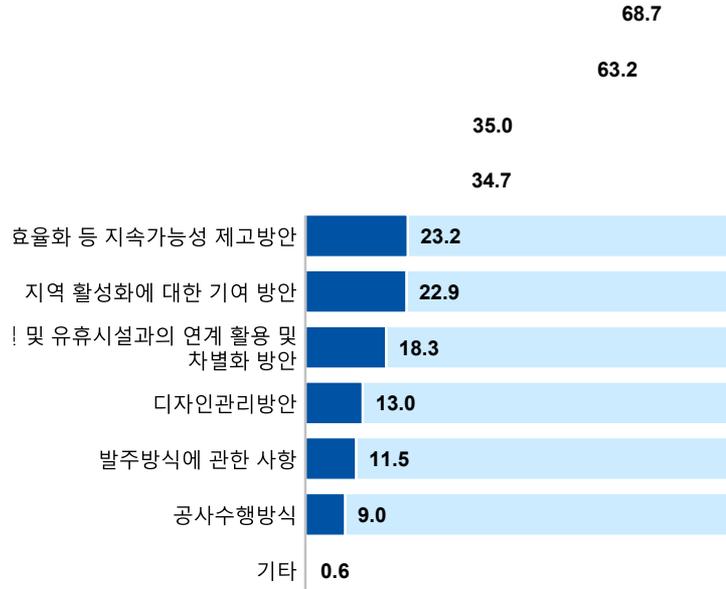
〈표 3-17〉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법제화 인지도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구체적 잘 알고 있다	BOT 2%	So So	TOP 2%	5점 평균
전 체		(323)	46.1	18.6	22.9	8.7	3.7	64.7	22.9	12.4	2.05
공무원		(223)	53.4	17.0	20.2	4.9	4.5	70.4	20.2	9.4	1.9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4.4	12.2	22.0	22.0	19.5	36.6	22.0	41.5	3.00
	경험 없음	(182)	59.9	18.1	19.8	1.1	1.1	78.0	19.8	2.2	1.65
건축가		(100)	30.0	22.0	29.0	17.0	2.0	52.0	29.0	19.0	2.3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21.7	21.7	30.4	23.2	2.9	43.5	30.4	26.1	2.64
	경험 없음	(31)	48.4	22.6	25.8	3.2	0.0	71.0	25.8	3.2	1.84

건축기획 업무의 단계적 수행을 위한 사업초기 우선 검토사항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이 68.7%로 가장 높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공공건축물 사업초기 검토 우선사항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복수응답]



이러한 우선 검토사항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41.2%,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비율이 3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건축가 모두 우선 검토사항의 수행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는 공통적이 나, 건축가는 민간 건축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의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8〉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수행 주체

	사례 수	공공기관 직접 수행	수원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에게 의뢰	민간 건축사 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의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의뢰	기타	
전 체	(323)	41.2	36.2	12.4	9.0	1.2	
공무원	(223)	42.6	38.1	8.5	9.0	1.8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51.2	29.3	9.8	4.9	4.9
	경험 없음	(182)	40.7	40.1	8.2	9.9	1.1
건축설가	(100)	38.0	32.0	21.0	9.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37.7	30.4	21.7	10.1	0.0
	경험 없음	(31)	38.7	35.5	19.4	6.5	0.0

공공건축물에서 우선 검토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앞선 응답과 달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에게 의뢰가 34.1%, 공공기관이 31.6%로 순위가 바뀌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공무원은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은 반면, 건축가는 우선 검토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에게 의뢰와 민간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의뢰가 각각 32.0%로 공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5〉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이외의 수행 주체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표 3-19〉 공공건축물 우선 검토사항 이외의 수행 주체

		사례 수	수원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에게 의뢰	공공기관 직접 수행	민간 건축사 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의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의뢰	기타
전 체		(323)	34.1	31.6	22.9	11.1	0.3
공무원		(223)	35.0	35.4	18.8	10.3	0.4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34.1	24.4	36.6	4.9	0.0
	경험 없음	(182)	35.2	37.9	14.8	11.5	0.5
건축가		(100)	32.0	23.0	32.0	13.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29.0	20.3	39.1	11.6	0.0
	경험 없음	(31)	38.7	29.0	16.1	16.1	0.0

건축기획 대상 선정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건축기획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1.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할 때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주체의 경우 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한 응답 비중이 공무원과 건축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3-20〉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규모 고려)

		사례 수	그렇다 기준이 필요하다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 체		(323)	81.4	18.6
공무원		(223)	82.1	17.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73.2	26.8
	경험 없음	(182)	84.1	15.9
건축가		(100)	80.0	2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81.2	18.8
	경험 없음	(31)	77.4	22.6

〈표3-21〉 건축기획 대상 선정 조건(설계비 기준 적정 수준)

		사례 수	설계비 2천만원 이상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설계비 1억원 이상	기타
전 체		(263)	16.3	39.9	40.3	3.4
공무원		(183)	18.6	39.9	37.7	3.8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30)	26.7	30.0	33.3	10.0
	경험 없음	(153)	17.0	41.8	38.6	2.6
건축가		(80)	11.3	40.0	46.3	2.5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56)	12.5	32.1	51.8	3.6
	경험 없음	(24)	8.3	58.3	33.3	0.0

건축기획의 대가기준 관련, 인력 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의 경우도 별도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각각 36.6%, 59.4%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2〉 공사비 규모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 대가 기준

	사례 수	요율방식의 노동력 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기준 필요	현재 요율방식이 적당	요율방식은 적당하나 비중 상향	요율방식은 적당하나 비중 하향	기타	
전 체	(323)	34.7	29.7	20.1	12.7	2.8	
공무원	(223)	26.9	36.8	17.0	15.2	4.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36.6	26.8	24.4	9.8	2.4
	경험 없음	(182)	24.7	39.0	15.4	16.5	4.4
건축가	(100)	52.0	14.0	27.0	7.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59.4	8.7	24.6	7.2	0.0
	경험 없음	(31)	35.5	25.8	32.3	6.5	0.0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비율이 65.9%로 과반이상을 나타냈으며, 부정비율도 3.8%로 매우 낮아 건축기획이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부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70.7%가 영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6〉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표 3-23〉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사례 수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BOT 2%	So So	TOP 2%	5점 평균
전 체		(323)	1.9	1.9	30.3	55.7	10.2	3.7	30.3	65.9	3.71
공무원		(223)	1.8	1.3	27.4	57.0	12.6	3.1	27.4	69.5	3.77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4	2.4	24.4	46.3	24.4	4.9	24.4	70.7	3.88
	경험 없음	(182)	1.6	1.1	28.0	59.3	9.9	2.7	28.0	69.2	3.75
건축가		(100)	2.0	3.0	37.0	53.0	5.0	5.0	37.0	58.0	3.56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4	4.3	33.3	53.6	7.2	5.8	33.3	60.9	3.61
	경험 없음	(31)	3.2	0.0	45.2	51.6	0.0	3.2	45.2	51.6	3.45

2)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

총괄건축(계획)가의 주요 업무로는 중복응답일 경우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비전·미래상 수립 자문(59.1%), 통합마스트플랜 검토·선정·총괄(51.7%),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정책 발굴(48.6%)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그림 3-7〉 총괄건축(계획)가의 주요 업무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가능이 절반을 넘는 5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가능이 26.0%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두 번 연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축가는 한 번 연임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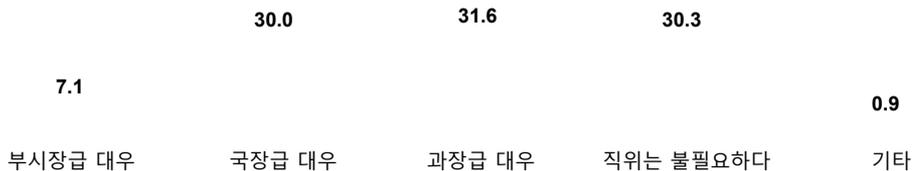
〈표 3-24〉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

		사례 수	2년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 가능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 가능	2년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임
전 체		(323)	12.1	51.4	26.0	10.5
공무원		(223)	10.3	48.4	30.0	11.2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9.8	51.2	29.3	9.8
	경험 없음	(182)	10.4	47.8	30.2	11.5
건축가		(100)	16.0	58.0	17.0	9.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7.4	56.5	15.9	10.1
	경험 없음	(31)	12.9	61.3	19.4	6.5

총괄건축(계획)가에 대한 적정한 처우는 과장급 대우가 31.6%, 국장급 대우가 30.0%, 부시장급 대우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는 직위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림 3-8〉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처우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근무방식은 비상근직으로 주 3~5일 근무에 대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상근직 30.0%, 비상근직으로 주 1~2일 근무가 23.5%로 나타났다.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비상근직 주 1~2일 근무가 29.3%로 2순위로 나타났다.

〈표 3-25〉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근무방식

		사례 수	비상근직 주 1-2일 근무	비상근직 주 3-5일 근무	상근직	기타
전 체		(323)	23.5	45.2	30.0	1.2
공무원		(223)	19.7	46.6	32.3	1.3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9.3	46.3	22.0	2.4
	경험 없음	(182)	17.6	46.7	34.6	1.1
건축가		(100)	32.0	42.0	25.0	1.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39.1	37.7	23.2	0.0
	경험 없음	(31)	16.1	51.6	29.0	3.2

공공건축가 모집시 수원지역에 대한 지역 배정에 대한 의견은 '30%'가 35.9%, '50%'가 27.6%로 지역안배에 대한 긍정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지역안배 불필요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6〉 공공건축가 모집시 수원지역 비중 의견

		사례 수	지역안배 불필요	지역비중 30%	지역비중 50%	초기 30% 4년 후 폐지	기타
전 체		(323)	28.2	35.9	27.6	8.0	0.3
공무원		(223)	30.9	35.0	24.7	9.0	0.4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34.1	29.3	31.7	4.9	0.0
	경험 없음	(182)	30.2	36.3	23.1	9.9	0.5
건축가		(100)	22.0	38.0	34.0	6.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21.7	39.1	34.8	4.3	0.0
	경험 없음	(31)	22.6	35.5	32.3	9.7	0.0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에 대한 태도는 3명 중 2명이 참여해도 된다는 비율이 나타났다.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본인이 참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는 응답 비중이 과반이 넘는 58.5%를 나타냈다.

〈표 3-27〉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여 의견

		사례 수	기획업무 참여부와 관련 없이,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본인이 참여한 사업이 아닌 경우만,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엄격한 운영을 위해 공공건축가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전 체		(323)	18.3	47.1	34.7
공무원		(223)	20.6	47.1	32.3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4.4	58.5	17.1
	경험 없음	(182)	19.8	44.5	35.7
건축가		(100)	13.0	47.0	4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3.0	46.4	40.6
	경험 없음	(31)	12.9	48.4	38.7

기획한 공공건축가가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기획업무 참여 유무 없이 참여해도 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고,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경우 본인이 참여한 사업을 제외하고 참여해도 된다는 응답 비중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8〉 (기획한) 공공건축가의 설계공모 심사 참여 의견

		사례 수	본인이 참여한 사업 외,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일체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참여한 사업에 대해 발표자로 참여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기타
전 체		(323)	41.2	32.2	16.4	9.9	0.3
공무원		(223)	40.8	30.9	16.6	11.2	0.4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53.7	22.0	9.8	14.6	0.0
	경험 없음	(182)	37.9	33.0	18.1	10.4	0.5
건축가		(100)	42.0	35.0	16.0	7.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37.7	39.1	17.4	5.8	0.0
	경험 없음	(31)	51.6	25.8	12.9	9.7	0.0

공공건축가가 직접 기획한 이후 직접 설계를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7.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직접 기획 이후에 설계를 수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3-29〉 공공건축가의 직접 기획 후 설계 수행 의견

		사례 수	필요	소규모 한정 수행	불필요
전 체		(323)	44.0	38.4	17.6
공무원		(223)	44.4	35.9	19.7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48.8	31.7	19.5
	경험 없음	(182)	43.4	36.8	19.8
건축가		(100)	43.0	44.0	13.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43.5	42.0	14.5
	경험 없음	(31)	41.9	48.4	9.7

공공건축시 엔지니어링 단가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43.7%이나 현재의 단가 이외에 별도의 대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7%로 좀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의 경우 별도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각각 65.9%, 72.5%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0〉 공공건축시 엔지니어링 단가의 총괄/공공건축가 적용

		사례 수	적정하다	별도의 대가기준 마련해야 함	기타
전 체		(323)	43.7	55.7	0.6
공무원		(223)	49.3	49.8	0.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34.1	65.9	0.0
	경험 없음	(182)	52.7	46.2	1.1
건축가		(100)	31.0	69.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27.5	72.5	0.0
	경험 없음	(31)	38.7	61.3	0.0

이러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54.5%로 과반 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의 응답 비중은 각각 58.5%, 6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수원시의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표 3-31〉 수원시의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BOT 2%	So So	TOP 2%	5점 평균	
전 체	(323)	1.2	5.6	38.7	45.5	9.0	6.8	38.7	54.5	3.55	
공무원	(223)	1.8	6.7	37.7	44.4	9.4	8.5	37.7	53.8	3.53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4.9	12.2	24.4	41.5	17.1	17.1	24.4	58.5	3.54
	경험 없음	(182)	1.1	5.5	40.7	45.1	7.7	6.6	40.7	52.7	3.53
건축가	(100)	0.0	3.0	41.0	48.0	8.0	3.0	41.0	56.0	3.61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0.0	2.9	36.2	49.3	11.6	2.9	36.2	60.9	3.70
	경험 없음	(31)	0.0	3.2	51.6	45.2	0.0	3.2	51.6	45.2	3.42

3) 추진조직 및 설계공모 운영

공공건축 기획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62.8%이고, 전담인력만 필요하다는 비율이 31.6%로 합계 94.4%였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2〉 공공건축 기획의 전담조직 필요성

		사례 수	전담조직이 필요	전담인력만 필요	불필요	기타
전 체		(323)	62.8	31.6	5.0	0.6
공무원		(223)	63.7	30.0	5.4	0.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70.7	24.4	4.9	0.0
	경험 없음	(182)	62.1	31.3	5.5	1.1
건축가		(100)	61.0	35.0	4.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60.9	33.3	5.8	0.0
	경험 없음	(31)	61.3	3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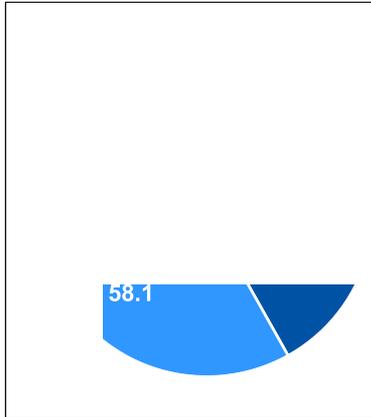
이러한 전담조직에 필요한 적정인력은 평균 9.35명으로 나타났으며,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10.28명을 나타냈다.

〈표 3-33〉 전담조직의 적정 인력

		사례 수	0명	1명	2~3명	4~5명	6~10명	11명 이상	평균
전 체		(305)	6.2	2.3	6.6	19.0	41.0	24.9	9.35
공무원		(209)	8.1	2.9	7.7	19.1	37.8	24.4	9.02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39)	5.1	0.0	15.4	12.8	38.5	28.2	10.28
	경험 없음	(170)	8.8	3.5	5.9	20.6	37.6	23.5	8.73
건축가		(96)	2.1	1.0	4.2	18.8	47.9	26.0	10.06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5)	1.5	0.0	6.2	21.5	47.7	23.1	9.95
	경험 없음	(31)	3.2	3.2	0.0	12.9	48.4	32.3	10.29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는 기획과 공사 등 공공건축 관련 전단계를 전담하는 독립조직(예. 공공건축추진단 등)에 대한 비율이 58.1%로 공공건축 기획만 전담하는 조직(예. 공공건축기획팀 등) 41.9%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75.9%가 전단계를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34〉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



		사례 수	공공건축 기획 전담조직	전단계 전담 독립조직
전 체		(305)	41.9	58.1
공무원		(209)	42.3	57.7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39)	24.1	75.9
	경험 없음	(170)	46.9	53.1
건축가		(96)	41.0	59.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5)	35.7	64.3
	경험 없음	(31)	52.6	47.4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은 중복응답을 허용한 경우 운영매뉴얼의 부재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건축 심의절차에 대한 발주조직의 인식 부족(38.4%), 심도 있는 토론 논의 등이 미흡한 형식적 운영형식적인 운영(32.8%),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그림 3-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전체 건축정책의 방향성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공공건축 기획이 연계되기 위하여, 축정책 체계(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62.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는 각각 68.3%, 69.6%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3-11〉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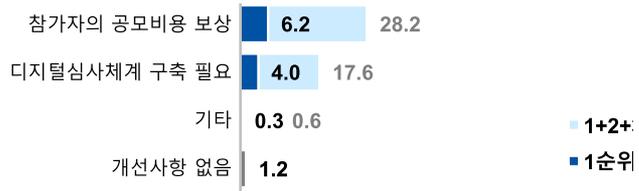
〈표 3-35〉 건축정책 체계의 도입 필요성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BOT 2%	So So	TOP 2%	5점 평균
전 체		(323)	0.9	1.5	35.0	52.0	10.5	2.5	35.0	62.5	3.70
공무원		(223)	1.3	1.8	33.6	51.6	11.7	3.1	33.6	63.2	3.7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4.9	2.4	24.4	43.9	24.4	7.3	24.4	68.3	3.80
	경험 없음	(182)	0.5	1.6	35.7	53.3	8.8	2.2	35.7	62.1	3.68
건축가		(100)	0.0	1.0	38.0	53.0	8.0	1.0	38.0	61.0	3.68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0.0	1.4	29.0	59.4	10.1	1.4	29.0	69.6	3.78
	경험 없음	(31)	0.0	0.0	58.1	38.7	3.2	0.0	58.1	41.9	3.45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중복응답을 허용한 경우 심사위원 구성·선정방식 개선이 7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표준업무 편람 마련(49.2%), 심사결과 및 심사과정 공개 강화(45.2%)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경우 심사위원구성·선정방식 개선 외에 심사결과 및 심사과정 공개강화가 56.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림 3-12〉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의 우선 개선사항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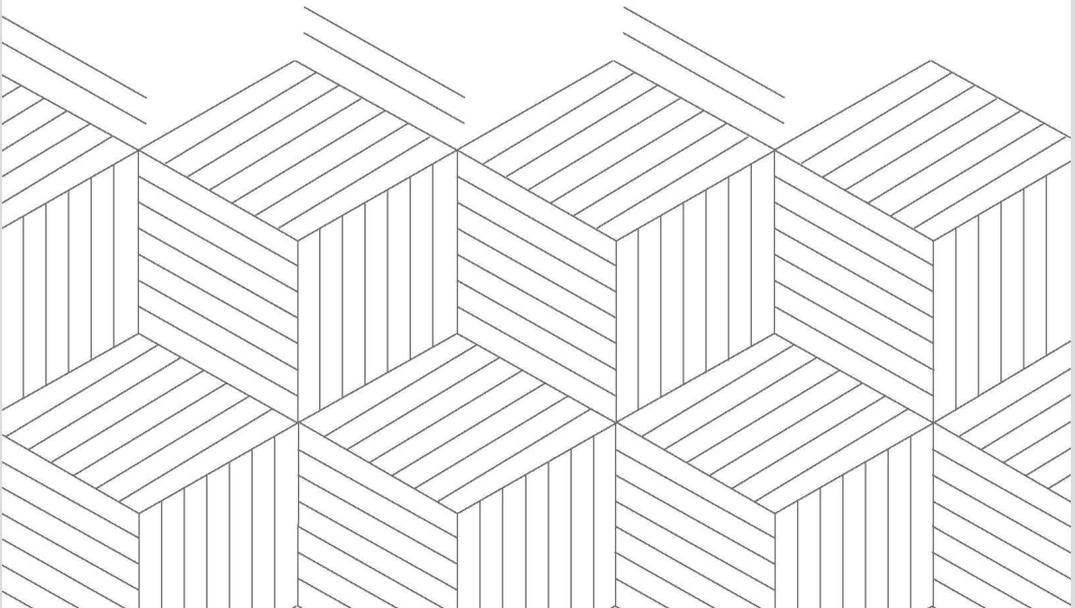


〈표 3-36〉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의 우선 개선사항 (1+2+3순위)

		사례 수	공정성 강화	지역 제한 최소화	지침/표준업 무편람	토론과 현장 답사	결과/과정 공개	공모비 보상	디지털 심사 구축	개선 사항 없음	기타
전 체		(323)	70.9	39.9	49.2	44.6	45.2	28.2	17.6	1.2	0.6
공무원		(223)	73.5	43.0	53.4	47.5	40.4	22.9	17.0	0.4	0.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63.4	43.9	48.8	51.2	39.0	36.6	14.6	0.0	2.4
	경험 없음	(182)	75.8	42.9	54.4	46.7	40.7	19.8	17.6	0.5	0.5
건축가		(100)	65.0	33.0	40.0	38.0	56.0	40.0	19.0	3.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62.3	33.3	37.7	31.9	58.0	47.8	24.6	1.4	0.0
	경험 없음	(31)	71.0	32.3	45.2	51.6	51.6	22.6	6.5	6.5	0.0

제4장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제2절 건축기획의 운영체계 구축
제3절 건축기획 추진기반 조성



제4장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 정책 개요

앞선 정책수요 조사 결과, 수원시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 모두 공공건축 기획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전반적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건축 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반이상인 65.9%가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건축기획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수원시 공무원의 경우 70% 넘게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여, 실제적으로 추진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1〉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

		사례 수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TOP2 %	5점 평균
전 체		(323)	1.9	1.9	30.3	55.7	10.2	65.9	3.71
공무원		(223)	1.8	1.3	27.4	57.0	12.6	69.5	3.77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4	2.4	24.4	46.3	24.4	70.7	3.88
	경험 없음	(182)	1.6	1.1	28.0	59.3	9.9	69.2	3.75
건축가		(100)	2.0	3.0	37.0	53.0	5.0	58.0	3.56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4	4.3	33.3	53.6	7.2	60.9	3.61
	경험 없음	(31)	3.2	0.0	45.2	51.6	0.0	51.6	3.45

수원시 건축기획의 추진 시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식별을 위해 수원시정 내 건축기획 업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기획추진의 전문성 갖춘 인력이나 조직의 부족'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획 업무의 표준화된 업무절차 부재'(39.0%), '기획의 대가가 없거나 낮음'(34.1%) 등의 순서를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4-2〉 건축기획 업무수행 시 주된 어려움 (1+2순위)

	사례 수	기획의 대가가 없거나 낮음	경제성, 사업성 분석 등의 능력 부족	기획 업무의 표준화된 업무절차 부재	기획추진의 전문성 갖춘 인력이나 조직 부족	기획 참여자들의 의견 충돌에 따른 갈등	내실 있는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 부족	관련 조례,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등 제도적 기반 미흡
전 체	(110)	58.2	20.0	30.0	31.8	19.1	37.3	2.7
건축기획 경험 있는 공무원	(41)	34.1	22.0	39.0	70.7	12.2	19.5	0.0
건축기획 경험 있는 건축가	(69)	72.5	18.8	24.6	8.7	23.2	47.8	4.3

이러한 ‘기획추진의 전문성 갖춘 인력이나 조직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정내 추진 조직의 설치와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수요를 확인하였다. 수원시의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5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는 각각 58.5%와 60.9%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3〉 수원시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추진 필요성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BOT 2%	So So	TOP 2%	5점 평균
전 체		(323)	1.2	5.6	38.7	45.5	9.0	6.8	38.7	54.5	3.55
공무원		(223)	1.8	6.7	37.7	44.4	9.4	8.5	37.7	53.8	3.53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4.9	12.2	24.4	41.5	17.1	17.1	24.4	58.5	3.54
	경험 없음	(182)	1.1	5.5	40.7	45.1	7.7	6.6	40.7	52.7	3.53
건축가		(100)	0.0	3.0	41.0	48.0	8.0	3.0	41.0	56.0	3.61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0.0	2.9	36.2	49.3	11.6	2.9	36.2	60.9	3.70
	경험 없음	(31)	0.0	3.2	51.6	45.2	0.0	3.2	51.6	45.2	3.42

한편 추진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건축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공공건축 기획의 적절한 대가산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사례 수	전담조직이 필요	전담인력만 필요	불필요	기타
전 체		(323)	62.8	31.6	5.0	0.6
공무원		(223)	63.7	30.0	5.4	0.9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70.7	24.4	4.9	0.0
	경험 없음	(182)	62.1	31.3	5.5	1.1
건축가		(100)	61.0	35.0	4.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60.9	33.3	5.8	0.0
	경험 없음	(31)	61.3	38.7	0.0	0.0

이렇게 도출된 우선적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크게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 건축기획 대상 정립, 건축기획 추진체계 구축, 건축기획 추진기반 조성 등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체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수원시 건축기획 내실화 정책 개요



제2절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 :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확립

1. 총괄건축(계획)가 세부 운영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중 총괄건축(계획)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기, 경력, 주요역할, 위상, 공공건축가와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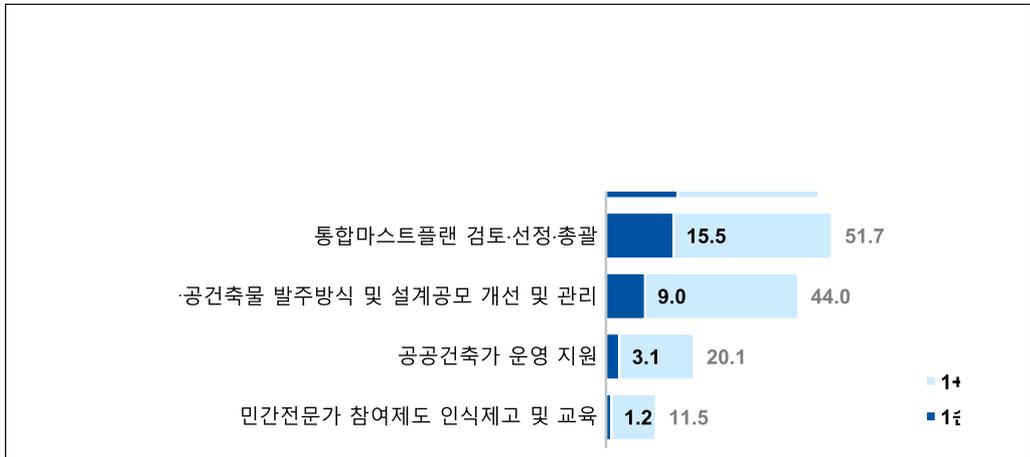
총괄건축(계획)가의 임기는 '보직 2년에 연임 가능'을 우선 고려한다. 국토부(2019)에 따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로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가능'이 과반이 넘는 51.4%를 차지하였다.

총괄건축(계획)가의 적정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가능이 절반을 넘는 5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가능이 26.0%로 나타났다.

		사례 수	2년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 가능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 가능	2년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임
전 체		(323)	12.1	51.4	26.0	10.5
공무원		(223)	10.3	48.4	30.0	11.2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9.8	51.2	29.3	9.8
	경험 없음	(182)	10.4	47.8	30.2	11.5
건축가		(100)	16.0	58.0	17.0	9.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7.4	56.5	15.9	10.1
	경험 없음	(31)	12.9	61.3	19.4	6.5

총괄건축(계획)가의 주요 업무로는 ①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비전·미래상 수립 자문 등 시장의 정책파트너, ②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③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통합마스트플랜 검토, 선정, 총괄 등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

정책수요 조사 결과, 총괄건축(계획)가의 주요 업무로는 중복응답일 경우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비전·미래상 수립 자문(59.1%), 통합마스트플랜 검토·선정·총괄(51.7%),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정책 발굴(48.6%) 등의 순서를 나타냄



경력은 앞서 언급한 주요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건축과 도시계획을 아우르는 경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위상은 ‘국장급 대우’를 고려할 수 있다. 위상에 대한 정책수요 결과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과 과장급 대우가 비중이 같았고, 건축가의 경우 국장급이 과장급 대우보다 응답 비중이 높았다. 다만 국장급, 과장급, 직위 불필요 간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각 지자체도 부지사급(제주도), 부사장급(서울특별시), 과장급(당진시), 해당보직 없음(파주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요 조사 결과, 총괄건축(계획)가에 대한 적절한 처우는 과장급 대우가 31.6%, 국장급 대우가 30.0%, 부시장급 대우가 7.1%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30.0%는 직위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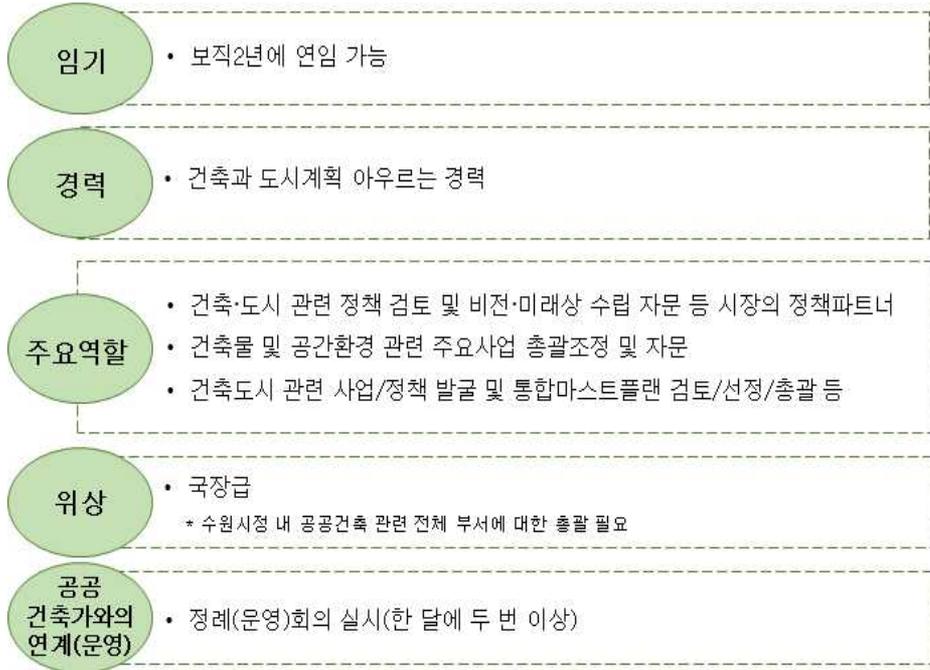
		사례수	부시장급 대우	국장급 대우	과장급 대우	직위는 불필요하다	기타
전 체		(323)	7.1	30.0	31.6	30.3	0.9
공무원		(223)	5.8	30.0	36.8	26.0	1.3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14.6	29.3	29.3	26.8	0.0
	경험 없음	(182)	3.8	30.2	38.5	25.8	1.6
건축가		(100)	10.0	30.0	20.0	40.0	0.0
건축 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8.7	30.4	21.7	39.1	0.0
	경험 없음	(31)	12.9	29.0	16.1	41.9	0.0

공공건축가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례(운영)회의 실시를 고려한다. 사례조사 결과 별도의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공공건축가와의 정기적 회의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5개 분과를 둔 운영협의체를 두고 있고, 당진시와 청주시는 한 달에 1~2회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정례회의의 주요 역할로는 공공건축 기획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개별 사업 담당 공공건축가를 선정한다. 회의를 통해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설계심사위원 추천 등도 진행한다. 회의에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전담조직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총괄건축(계획)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2〉 총괄건축(계획)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



2.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중 공공건축가의 구성과 관련해서 규모, 경력, 지역 건축가 비중, 선정방식 등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 임기, 주요 역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위원회 참여 영부, 사업수행 등을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구성과 관련하여 수원시 공공건축가의 규모는 20명 내외를 고려한다. 경력은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15명 내외로 하고, 도시/조경/경관 분야 전문가를 5명 내외로 포함한다. 수원시 공공건축 현황에서 2021년 기준으로 신규사업이 27건이고, 추정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6건이다. 이에 추정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공공건축가 1인이 기획과제를 수행하되, 나머지 과제 중 인접대지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등 기능이나 장소적으로 묶어

서 진행 가능한 경우 기획과제로 설정한다. 나머지 21건은 2개 정도에 한 명이 자문 및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인력을 산정한다. 건축 이외에 사업별로, 여타 유관 분야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하여 도시, 조경, 경관 분야의 전문가도 5명 내외를 고려한다.

수원시 공공건축 현황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수원시 전체 발주된 공공건축물은 27개이며, 계약 금액 별로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수는 6개를 차지함.

계약금액	공공 건축물(개)	공공 건축물(%)
전 체	27	100.0
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12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	22.2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설계비 1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3	11.1
설계비 5천만 원 미만(6억 원 미만)	18	66.7

건축기획 대상 선정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건축기획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1.4%를 차지. 구체적으로 설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할 때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주체의 경우 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한 응답 비중이 공무원과 건축가 모두 높게 나타남.

	사례 수	설계비 2천만원 이상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설계비 1억원 이상	기타	
전 체	(263)	16.3	39.9	40.3	3.4	
공무원	(183)	18.6	39.9	37.7	3.8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30)	26.7	30.0	33.3	10.0
	경험 없음	(153)	17.0	41.8	38.6	2.6
건축가	(80)	11.3	40.0	46.3	2.5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56)	12.5	32.1	51.8	3.6
	경험 없음	(24)	8.3	58.3	33.3	0.0

공공건축가 중 지역건축가는 정원의 30% 정도를 안배하되, 장기적으로 지역안배를 없애는 방향을 고려한다. 정책수요 조사에서 지역비중과 관련된 응답에서 '지역비중 30%'가 가장 높은 응답이긴 했지만, '지역안배 불필요'나 '지역비중 50%' 역시 각각 28.2%, 27.6%이며 건축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의 우선순위가 상이하였다. 이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역건축가의 건축기획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비중을 일정부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 정도 지역건축가 비중을 두되 장기적으로 지역안배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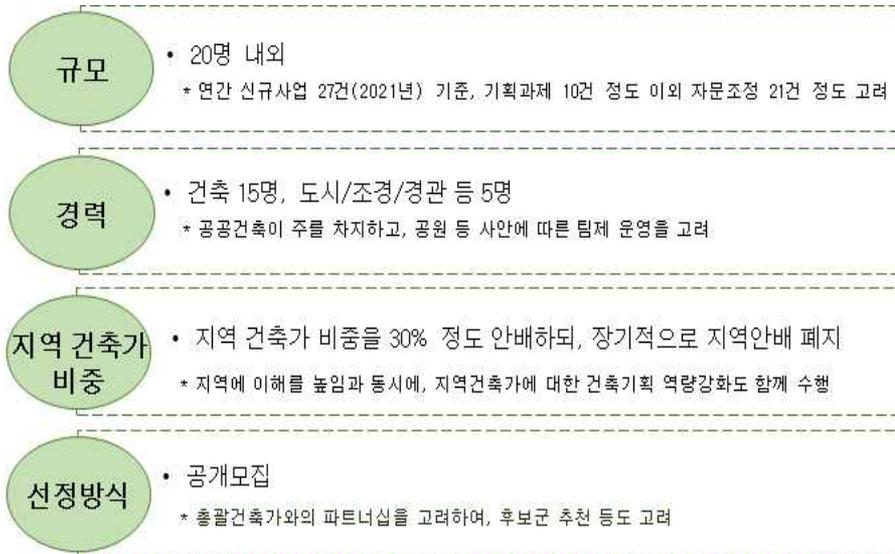
2021년 한 해 동안 수원시 전체 발주된 공공건축물은 27개이며, 계약 금액 별로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 수는 6개를 차지함.

계약금액	공공 건축물(개)	공공 건축물(%)
전체	27	100.0
설계비 1억 원 이상-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12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	22.2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설계비 1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3	11.1
설계비 5천만 원 미만 (6억 원 미만)	18	66.7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되, 총괄건축가와의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총괄건축가의 후보군 추천 등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청주, 파주 등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건축가를 모집하고 있으나, 총괄건축가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파트너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3〉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



□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다음으로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 임기는 보직 2년으로 하되, 사업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국토부(2019)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건축·도시 기획과제 수행, ②건축·도시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③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등 수행을 고려한다. 논란이 될수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직접 참여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 각각 80.5%, 85.5%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수요 조사 결과, 공공건축가가 직접 기획한 이후 직접 설계를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7.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 역시 각각 80.5%, 85.5%인 대부분의 응답자는 직접 기획 이후에 설계를 수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사례수	규모제한 없이 필요	소규모 한정 수행	불필요
전 체		(323)	44.0	38.4	17.6
공무원		(223)	44.4	35.9	19.7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48.8	31.7	19.5
	경험 없음	(182)	43.4	36.8	19.8
건축가		(100)	43.0	44.0	13.0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43.5	42.0	14.5
	경험 없음	(31)	41.9	48.4	9.7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는 본인 참여 사업 이외에는 참여를 고려하되, 본인이 참여한 공공건축 기획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공모위원회에는 기획과 설계 공모 분리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으로는 참여하지 않되, 공공건축 기획을 설명하는 역할로는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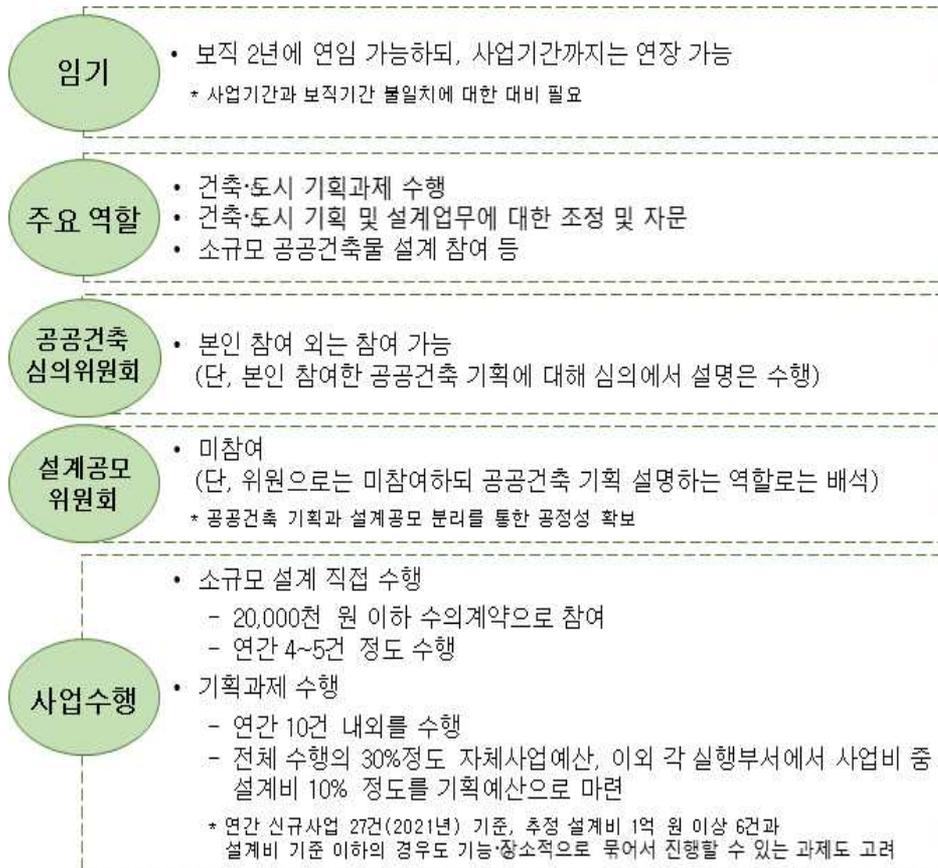
정책수요조사 결과,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에 대한 태도는 3명 중 2명이 참여해도 된다는 비율이 나타남.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본인이 참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다는 응답 비중이 과반이 넘는 58.5%를 나타냄

		사례수	위원으로 참여	본인이 참여한 사업 제외, 위원으로 참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
전 체		(323)	18.3	47.1	34.7
공무원		(223)	20.6	47.1	32.3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4.4	58.5	17.1
	경험 없음	(182)	19.8	44.5	35.7
건축가		(100)	13.0	47.0	40.0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13.0	46.4	40.6
	경험 없음	(31)	12.9	48.4	38.7

공공건축가의 기획과제 및 설계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획과제는 연간 10개 정도를 추진하도록 한다. 추정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공공건축가 1인이 기획과제를 수행하되, 나머지 과제 중 인접대지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등 기능이나 장소적으로 묶어서 진행 가능한 경우 기획과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과제 예산은 전체 수행의 30% 정도는 전담부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되, 이외는 각 실행부서에서 사업비 중 설계비의 10%정도를 기획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한다.

공공건축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4〉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제3절 건축기획의 대상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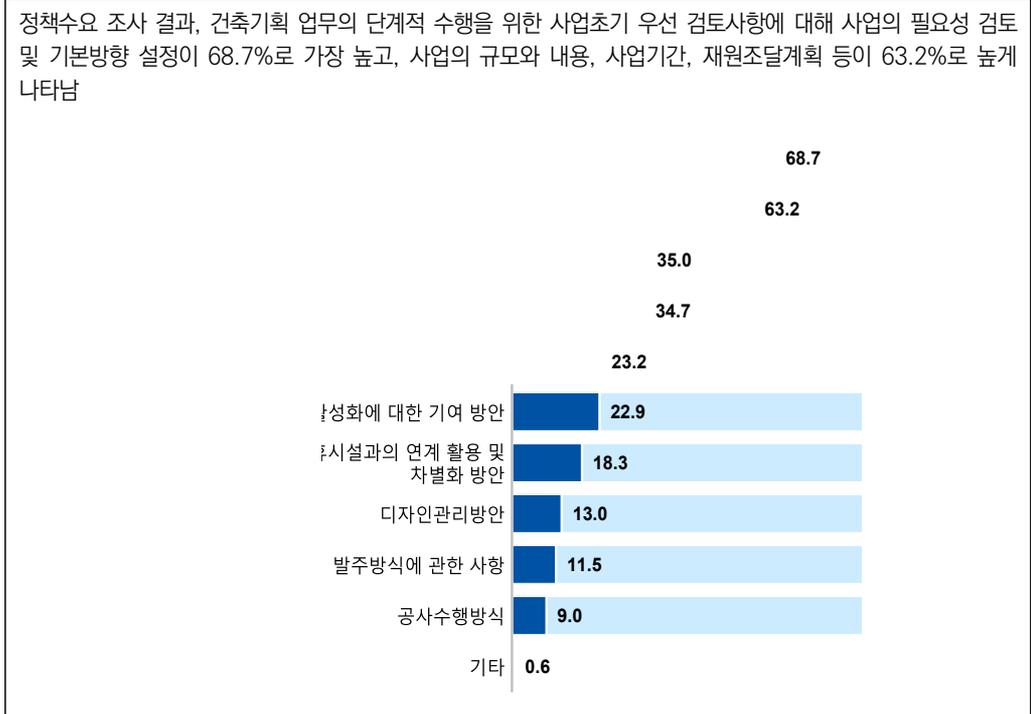
1.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기준·발굴방안 마련

공공건축 기획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준은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해 기획과제화 하고,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설계 관련 자문과 조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연간 공공건축 기획 수행 규모는 27건 내외를 고려하되, 이중 기획과제 10건 정도 추진하고, 나머지는 자문 및 조정을 진행한다.⁴³⁾

공공건축 기획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와 종류와 상관없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행조직의 예산과 인력 등의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수원시의 경우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기획과제 대상으로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을 고려하고, 필요시 이 이하여도 기능이나 장소 단위로 묶어서 기획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획 관련 업무 중 공공이 사업초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 방향 설정’과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①시장 주재 정책회의에 총괄건축가 및 전담조직 책임자 배석, ②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총괄건축가 참여, ③연 2회 각 부서와 자치구 등 수요조사 실시와 상시의뢰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43) 앞선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 인력산정의 근거에서 관련 정책수요 조사 내용과 정책현황 등 자세히 기술



2. 공공건축 기획의 예산 및 대가기준

기획과제 예산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전체 기획과제 수행의 30% 정도 전담조직의 자체 사업 예산으로 하되, 이외 각 기획을 의뢰한 실행부서의 사업비 중 설계비의 10% 정도를 기획예산으로 마련한다.

기획에 대한 대가기준 역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효율방식을 현실화하여, 노동력 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기준은 마련한다. 이는 정책수요 조사를 통해서도 효율방식 외 별도의 대가기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정책수요 조사 결과, 건축기획의 대가기준 관련, 인력 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의 경우도 별도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각각 36.6%, 59.4%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별도의 대가기준 필요	현재 요율방식이 적당	요율방식은 적당하나 비중 상향	요율방식은 적당하나 비중 하향	기타
전 체		(323)	34.7	29.7	20.1	12.7	2.8
공무원		(223)	26.9	36.8	17.0	15.2	4.0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36.6	26.8	24.4	9.8	2.4
	경험 없음	(182)	24.7	39.0	15.4	16.5	4.4
건축가		(100)	52.0	14.0	27.0	7.0	0.0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59.4	8.7	24.6	7.2	0.0
	경험 없음	(31)	35.5	25.8	32.3	6.5	0.0

구체적으로 김은희 외(2017)에서 별도의 대가기준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실비정책가산방식 적용과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대가기준(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원시 실정에 부합하는 별도의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토 및 세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비정책가산방식 적용과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대가기준 차별화(김은희외, 2017)

○ 실비정책가산방식 적용

-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설계업무 대가는 공사비 규모에 따른 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획업무 또한 이를 토대로 산출된 설계비 요율방식을 적용함
- 설계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건축기획 용역은 법정 수의계약 그랜(2,000만 원)에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비정책방식에 따른 대가는 최소 배에서 10배 이상(1.2억~1.9억) 높게 산출됨
- 체계적인 건축기획 업무 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실비정책가산에 의한 적정 대가 산출과 추후 계약체결로 이어져야 함
- 또한 실비정책가산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주처 및 사업자 모두 수급 가능한 건축사업 유형별 품셈기준(투입 인력, 시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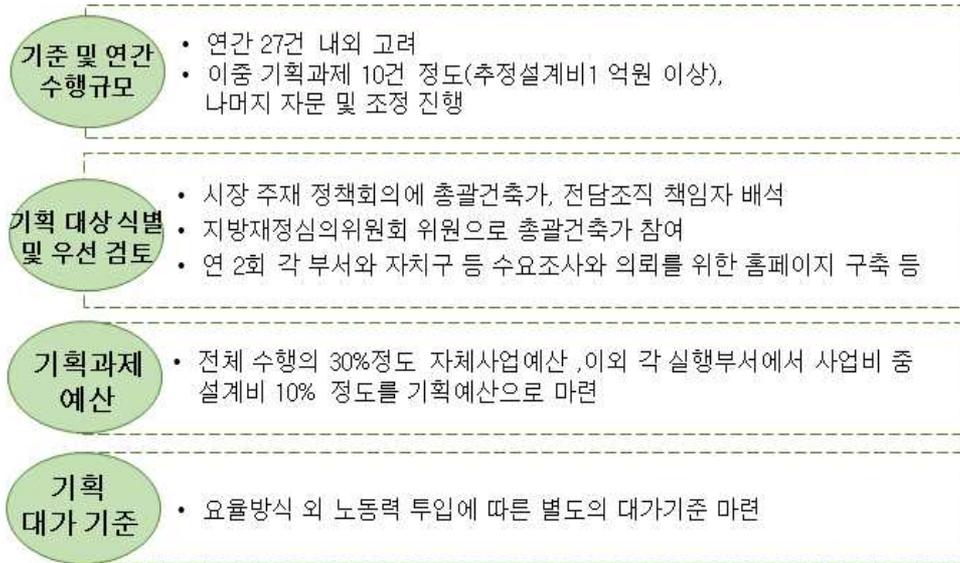
○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대가기준 차별화

- 실비정책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기획업무 대가를 산출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사업 여건 및 추진방식 등에 따라 업무범위와 수행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음. 이를 대가 산정 보정계수로 활용함
- 난이도 결정기준은 크게 사업규모, 건축기획 업무범위 중 타 분야 전문가 협업여부, 사업부지 확정 여부, 건축물종별구분 등으로 설정함
- 사업규모 :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중대규모사업은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을 단계별 구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며,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을 일괄수행하는 경우와 설계기획을 중심으로 사업기획 내용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난이도를 차등 산정
- 타분야 협업여부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범위 :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특수 목적의 사업 등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차등 산정 필요
- 사업대상지의 결정 여부 :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대가가 부지확정 조건에서보다 대략 1.2배~1.5배가 높음

- 건축물 종별 구분 : 대규모 사업이라도 단순용도 건축물의 경우 난이도가 낮아 질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발생. 건축물 종별 구분은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대가 산정을 위한 종별구분기준을 활용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 정립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5〉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 정립



제4절 건축기획 추진체계 구축

1. 공공건축 기획 전담조직 구성

추진조직과 관련해서는 규모, 조직형태, 인력의 고용형태, 업무범위 등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정 내 추진조직 관련 정책수요 조사 결과, 공공건축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2.8%를 차지하였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70.7%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담조직 구성의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담조직의 적정 인력 규모로는 10명 내외를 고려하며, 조직 형태는 단기적으로 도시디자인단 내 ‘공공건축기획팀’을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공건축추진단’ 설치·운영한다. 구성 인력은 민간전문가와와의 관계정립과 전문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전공의 임기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업무범위와도 연계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획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축기획에서 시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전담하도록 한다.

〈표 4-5〉 전담조직의 적정 형태와 필요인력

		사례수	평균
전 체		(305)	9.35
공무원		(209)	9.02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39)	10.28
	경험 없음	(170)	8.73
건축가		(96)	10.06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65)	9.95
	경험 없음	(31)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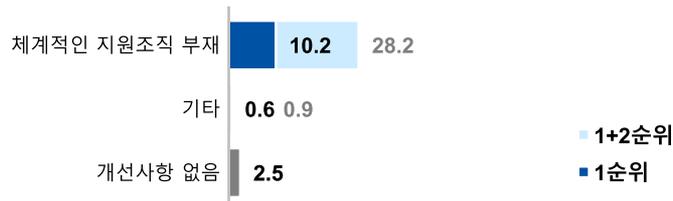
2. 유관조직 설치 및 운영 개선

공공건축 기획 관련 유관조직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책수요 조사 결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운영매뉴얼의 부재가 6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건축 심의절차에 대한 발주조직의 인식 부족(38.4%), 심도 있는 토론 논의 등이 미흡한 형식적 운영(3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선사항

[Base: 전체 응답자(323), Unit: %]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심의기준, 절차 등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특히, 운영매뉴얼에 토론과 논의에 기반한 위원회 운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적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 견학 등도 함께 추진도 고려한다.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등 기존 선행 자료에서 심의 절차와 내용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토론과 논의 등 민주적 운영방식 등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수원시정의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매뉴얼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심의절차를 포함하여 공공건축 기획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20.07) 주요 내용

- 공공건축심의 개요
 - 공공건축심의의 배경 및 법적 근거
 - 공공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내용
 - 공공건축심의 절차 및 방법
- 건축기획업무의적정성 심의 내용, 설계용역 과업설명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설계공모 지침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건축기획업무의 보완 여부 심의 내용 등 세부 내용 구체화
- 이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및 비대상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세부 자료' 등의 서식이 첨부

정책수요 결과, 건축정책 추진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2.5%로 과반을 넘었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건축가는 각각 68.3%, 69.6%로 높게 나타났다.

건축정책의 방향성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공공건축 기획이 연계되기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건축정책 추진체계의 도입을 고려한다. 이러한 건축정책 추진체계는 대부분 광역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수원시도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건축정책 추진체계를 도입·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 사례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역할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건축분야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실, 본부, 국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기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임
 - 건축기획과 관련해서는 총괄건축가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2분과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기획사업 배정, 기획대상사업 선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함
- 제2차 서울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 동 계획은 품격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공간 서울을 비전으로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공간환경 실현’ 등 3대 목표와 6대 전략 13개 실천과제를 구성
 - 시민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전략1. 건축문화 지원체계 마련, 전략2. 시민이 만드는 건축문화 자산
 -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전략3. 건축디자인 품질 향상 기반 구축, 전략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반 구축
 -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공간환경 실현 : 전략5.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공간환경 조성 시스템 개선, 전략6. 지속가능한 녹색 공간 환경 시스템 구축

3.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

정책수요 결과, 수원시정 내 설계공모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공정성 확보가 32.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지역제한의 최소화 혹은 폐지가 22.3%, 표준업무 편람 마련이 12.7% 등의 순서이다. 특히, 건축기획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지역제한 최소화 혹은 폐지’가 31.7%로 가장 높았다.

〈표 4-6〉 건축기획 업무수행 시 주된 어려움

	사례수	공정성 강화	지역 제한 최소화	지침/표준업 무편람	토론과 현장 답사	결과/과정 공개	공모비 보상	디지털 심사 구축	개선 사항 없음	기타	
전 체	(323)	32.5	22.3	12.7	10.5	10.2	6.2	4.0	1.2	0.3	
공무원	(223)	33.2	26.9	14.3	9.9	7.6	3.6	3.6	0.4	0.4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41)	22.0	31.7	12.2	14.6	9.8	4.9	4.9	0.0	0.0
	경험 없음	(182)	35.7	25.8	14.8	8.8	7.1	3.3	3.3	0.5	0.5
건축가	(100)	31.0	12.0	9.0	12.0	16.0	12.0	5.0	3.0	0.0	
건축기획 업무	경험 있음	(69)	30.4	8.7	11.6	11.6	17.4	11.6	7.2	1.4	0.0
	경험 없음	(31)	32.3	19.4	3.2	12.9	12.9	12.9	0.0	6.5	0.0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은 공공기획 전담조직이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 설계공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우선 위탁형태로 시범 추진한다.

이에 더해 전체 사업비 81억 원 이하에 대해서 시행하는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모시스템을 개선한다.

파주시 설계공모 운영 사례

파주시는 공공건축 기획과 관련하여 특히 건축설계공모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공모 과정 전체 외주와 공모지침서 개편, 지역가점제 폐지, 현상설계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체계 재구축 등을 포함함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역안배 없이 전국 심사위원 풀(pool)에서 경력 중심의 위원을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체계도 현장답사(오전)와 오후엔 숙의제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토론 후 1차 투표, 다시 토론 후 2차 투표로 진행하며, 투표 시 2~3개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다. 전체 과정에 담당 공무원도 심사에 함께 참여토록 하여 공공기획 관련 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는 엔지니어링 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설계공모시스템 개선에 따라, 공모 참여자 수의 증대와 전국단위, 신진건축가 참여 증대 등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개선 전 평균 3~4건에서, 개선 후인 2019년 조리읍행정복지센터의 경우3건 접수에 33건 제출하였고 2020년 광탄도서관은 143건 접수에 72건 제출을 기록하였다. 기존 지역(특정 2~3곳 위주)이나 중진건축가 중심의 당선에서 신진건축가 당선 비중이 증가함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체계 관련 세부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7〉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체계 관련 세부 방안



제5절 건축기획 추진기반 조성

1. 상위법에 대한 검토

공공건축기획 관련된 상위법으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있으며, 각각의 상위법 중 일부내용이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것이다. 「건축기본법」 중 민간전문가의 참여(제23조)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중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22조의2),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3조의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제23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4조의2) 등이 공공건축 기획 관련 내용이다.

〈표 4-7〉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

「건축기본법」 주요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민의 의무)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7조(실태조사)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창업지원)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7조(기획단)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등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수원시는 2022년 현재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부재하며, 건축정책 추진(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가진 집행조직은 부재하다.

반면 총괄건축(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 기획 수행,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건축 기획 전담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 의지가 확인된다. 수원시정 내 내부자료인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업무 추진 및 운영 계획”의 시장 결제를 통해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 계획은 건축기획용역 발주, 설계비1억 원 이상 사업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모니터링 수행 등 전반적인 공공건축 기획 추진과, 공공건축가 인력풀 확대, 공공건축가 설계공모 운영 참여 등 공공건축가 활용 계획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다.

2.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추진 방향

현재 수원시정 내 공공건축 기획과 관련된 자치조례로는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동 조례는 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외 공공건축 기획 관련 내용은 공공건축지원센터(제18조), 전략계획의 수립(제5조) 등으로 제한적이다.

〈표 4-8〉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배치·형태·색채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획·설계하고 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전략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사업 행정체계)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전문가 운영)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10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11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12조(민간전문가의 수당 등) 제13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4조(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

	<p>제15조(행정적 지원) 제1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17조(사후점검) 제18조(공공건축) ① 시장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건축 등 지원) 제20조(디자인교육 실시) 제21조(관계기관 및 대학 등 협업) 제22조(시행규칙)</p>
--	--

민간전문가 참여의 내용적 측면에서 도시경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포괄하고 있다. 도시경관, 건축물, 시설물 등 각각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가 이질적이며, 향후 각 시정 내 소관부서 역시 상이할 것을 고려할 때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민간전문가 참여를 도시PD제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분야와 자격기준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민간전문가 풀(Pool) 역시 중첩되지 않는다. 기존 공공건축 기획의 민간전문가 참여는 도시디자인개발 조직에서 경관, 시설물 등과 함께 추진하였으나, 공공건축 기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원시정 내에도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개별 조직의 추가 설치를 추진 중⁴⁴⁾이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 정책추진을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기획 조직 역시 동 조직 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기획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공공건축기획 관련 추진사항은 (가칭)「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신규제정을 추진한다.

3. 기존 조례의 개정과 신규 조례의 제정

1)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제 3장에 21조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부터 공공사업 행정체계(제6조)를 포괄하고, 제2장 민간전문가 참여는 민간전문가 참여(제7조)부터 민간전문가 해촉(제15조)를 포괄한다.

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그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 참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배치·형태·색채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획·설계하고 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전략계획”이란 도시디자인 개선·관리 방안을 모색 및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사업 행정체계”란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절차와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 관련 법령 또는 법정계획”이란 「건축기본법」,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및 그 계획을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다음 각 목의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 가. 총괄계획가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서 수원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 나. 공공건축가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로 수원시 주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과정을 총괄·조정
 - 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되는 전문가로서 수원시 주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수행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

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원의 미래비전과 공유가치
2.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권역별, 지역별, 도로별, 시설별 디자인 향상 방안
4.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도시관리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사업 행정체계)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공공사업의 행정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도시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디자인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디자인 향상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민간전문가 참여

제7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 계획가 운영)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원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발굴 및 자문
2. 시장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5.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수원시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원시의 개별 공공건축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참여·조정·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소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③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담당사업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운영)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원시 주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운영에 대한 자문
2.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담당사업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공공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3장 공공사업 사후점검 등

제16조(사후점검) ① 시장은 사용승인처리 된 공공사업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사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 이력 관리 대상
2.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협의 대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7조(민간건축 등 지원) 시장은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민간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디자인교육 실시) ① 시장은 디자인 의식을 높이고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의 프로젝트 참여 용역사 및 시공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디자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계적인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디자인교육 교재 개발
2. 디자인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 구성
3. 그 밖에 디자인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시민에게 디자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및 대학 등 협업) 시장은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교육·홍보·디자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대학 등과 협업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실무조정회의) ① 시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제2부시장이 주관하고 업무관련 실·국장 및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 사항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부시장은 실무조정회의를 거친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의 개별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

2) (가칭)「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전체 20조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및 내용(제5조, 제6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을 포함한다.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2. “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 ① 시장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4.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5.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 ③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시장등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원시 공공건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그 활용계획을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재검토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대한 응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시장은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총괄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조직으로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사업의 정책회의 참석을 정례화 한다.

제21조 (총괄부서의 업무) 총괄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총괄건축가 업무지원
- ②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 ③ 공공건축 기획 정책수립 업무지원
- ④ 공공건축 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⑥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및 공유
- ⑦ 공간환경 품질 제고를 위한 기획, 행사의 개최 및 지원
- ⑧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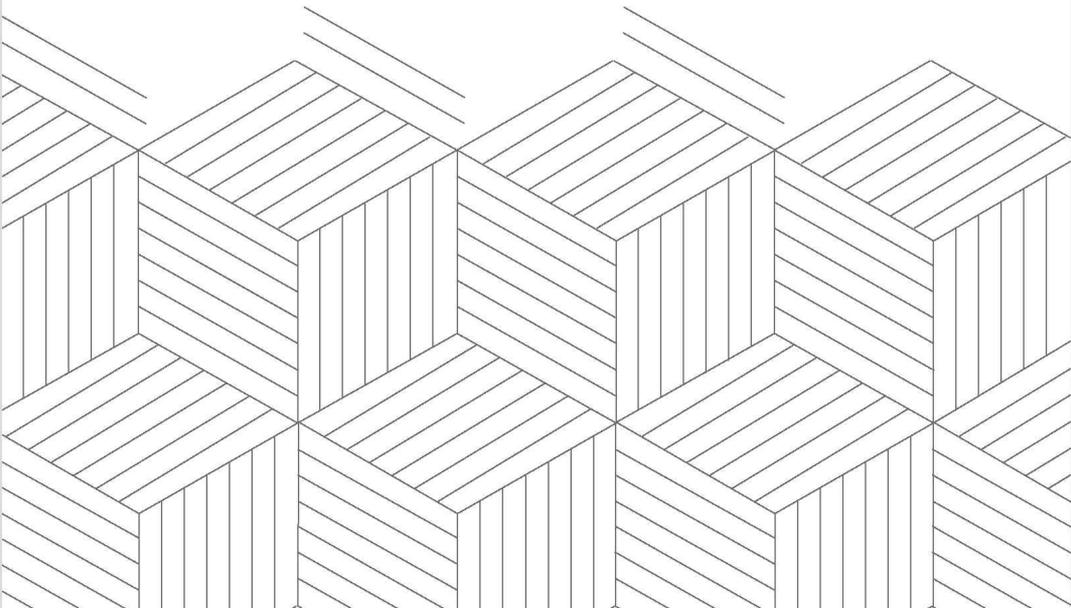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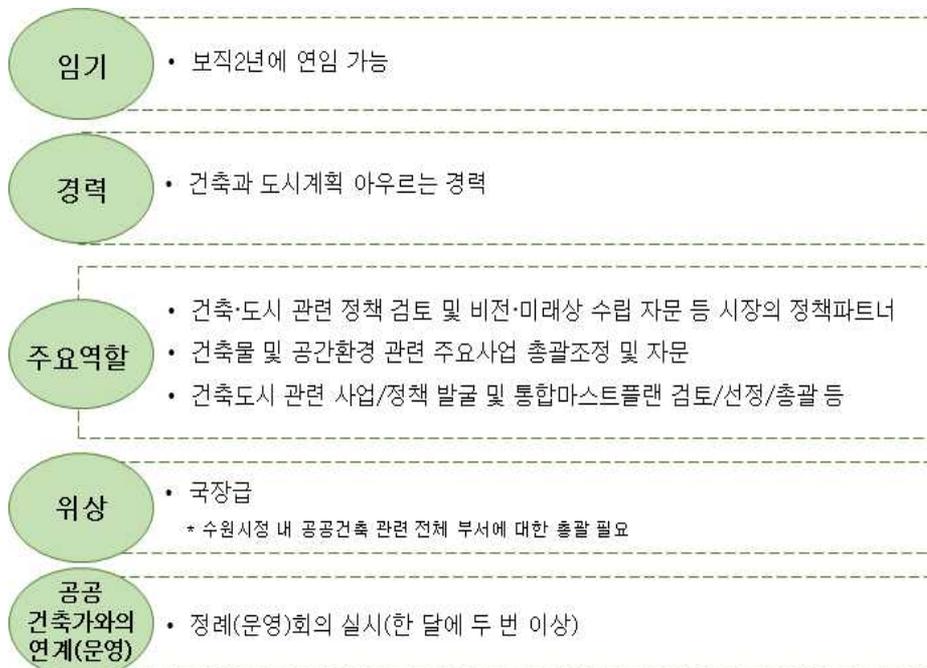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정책수요 조사 결과, 수원시 공무원과 건축가를 대상으로 전체 과반이상(65.6%)이 건축기획이 공공건축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수원시 건축기획 정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수원시 건축기획의 추진 시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요확인을 통해 실행력 높은 세부 방안 4개 부문으로 구체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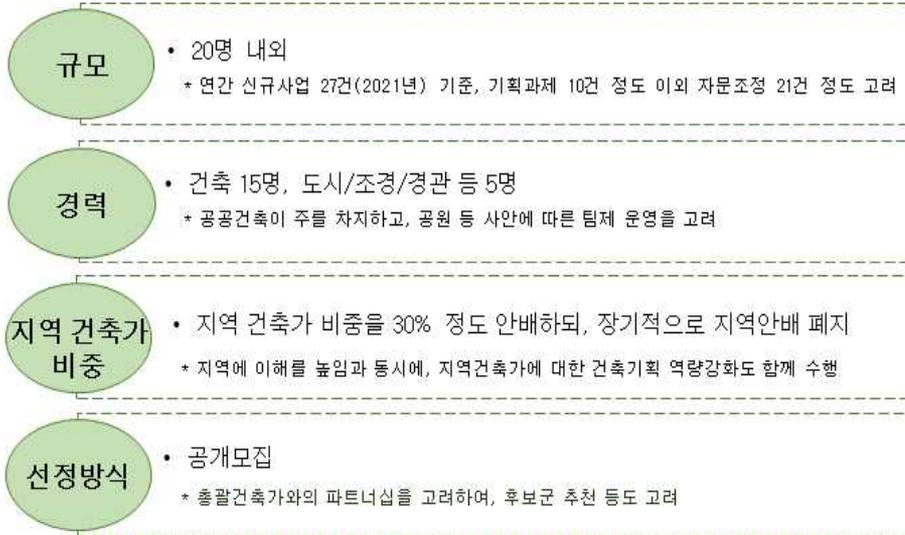
첫째, 건축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괄건축(계획)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총괄건축(계획)가의 임기, 경력, 주요 역할, 위상, 공공건축가와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1〉 총괄건축(계획)가 관련 세부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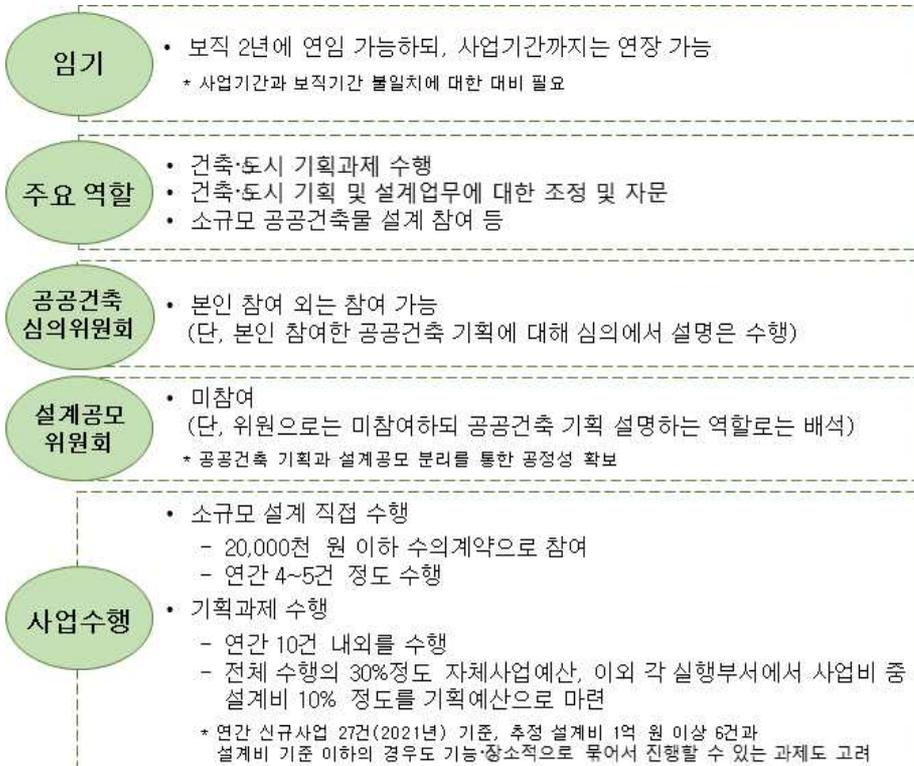


공공건축가는 규모, 경력, 지역 건축가 비중, 선정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건축가의 임기, 주요 역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위원회 참여, 사업 수행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정하였다.

〈그림 5-2〉 공공건축가 구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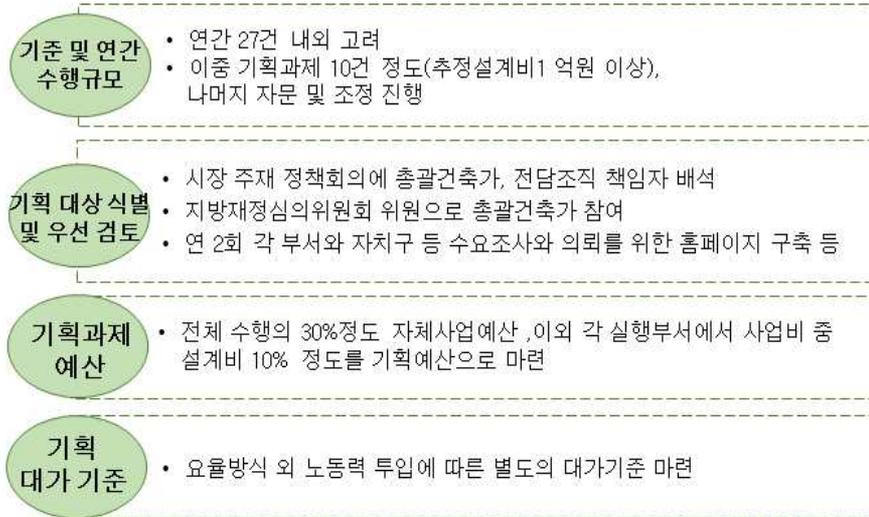


〈그림 5-3〉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둘째, 건축기획 대상 정립을 위하여 공공건축 기획 대상·기준·발굴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기획의 예산 및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건축 기획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수행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을 추정하였다. 공공건축 기획의 우선 업무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구체화하였다. 건축기획의 대가 기준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4〉 수원시 공공건축 기획의 대상 정립



셋째, 건축기획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건축 기획 전담 추진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유관조직의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축기획 전담 추진조직의 규모, 조직형태, 인력의 고용형태, 업무범위 등을 상세화하였다. 기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5〉 참조)

넷째, 건축기획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건축 기획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체 3장에 21조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부터 공사업 행정체계(제6조)를 포괄하고, 제2장 민간전문가 참여는 민간전문가 참여(제7조)부터 민간전문가 해촉(제15조)를 포괄한다.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전체 20조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및 내용(제5조, 제6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을 포함한다.

〈그림 5-5〉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체계 관련 세부 방안



제2절 향후과제

본 연구는 수원시 건축기획 추진을 위한 우선적 방안의 식별과 다각적 정책 방안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기획은 건축정책이라는 보다 큰 방향정립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건축기획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심의, 건축기획 대가기준, 건축기획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획업무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단계별 수행, 수행주체 등에 대한 세부 지침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경연, 오병찬, 박혜은, 김성희. (2020).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충남연구원.
- 구본준. (2010). 건축의 꽃 공공건축, 어떻게 선정할까?. 「희망세상」. pp.26-31.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0).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안내」.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9). 「이낙연 국무총리,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현장 방문」.
- 국토교통부. (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 국토교통부. (2019).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9).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202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20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안)」.
- 국토교통부. (202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2021).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2021).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 (2009).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영현. (2013). 프랑스 공공건축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MIQCP. 「건축과 도시공간」. pp. 60-64.
- 김은희, 서수정, 송선영. (2017).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혜련, 이운용, 이정형. (2018).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시스템 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시 공공건축 기획 사례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pp. 47-56.
- 당진시. (2021). 「(당진) 신평사회복지관 건축기획 보고서」.
- 문혁. (2008).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체계의 이해. 「국토」. pp. 150-159.
- 박석환, 이혜원. (2020).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 건축공간연구원.
- 박석환, 이혜원, 양은영, 배선혜. (202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박일우, 박영기. (2001). 건축기획의 개념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pp. 67-74.

- 법제처. (201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부산광역시. (2020). 「2021년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2016).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 서울특별시. (2016).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6).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9).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 지침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도시공간기획과). (2021). 「건축기본계획 수립 업무 이관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2020). 「202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 심경미, 이해원, 김민경. (2020).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염철호, 박석환, 이해원. (2019).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임현성, 김영현. (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숙경, 차주영. (2022). 「당진시 민간전문가 제도_3차년도 성과와 과제」. 당진시.
- 조준배. (2013). 영주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험과 성과. 「건축과 도시공간」. pp. 81-87.
- 조준배. (2014). [영주시 공공건축가 및 디자인관리단] 영주시 공공건축가제도 및 재생(디자인)
관리단 소개 및 성과. 「건축과사회」. pp. 87-97.
- 차주영, 조준배, 박선영. (2014).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파주시. (2021).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 파주' 공공건축 고도화」.
- 파주시 회계과. (2019).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 행정안전부. (2017). 「2018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홈페이지〉

- 건축사뉴스. (2020.05.21.).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0>
- 건축사신문. (2020.05.28.).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7>
- 건축사신문. (2021.11.16.).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0>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0.01.13.). <https://www.npbc.or.kr/trend/postView?cid=1&pid=1838&lname=page01>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2020.12.). http://www.pcap.go.kr/_themes/default/upload/newsletter/46/sub02.html
- 데일리한국. (2022.04.06.).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174>
- 미디어제주. (2021.01.06.).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2>

8207

법제처. www.moleg.go.kr.

서울특별시. (2016.01.04.).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9600>

서울특별시. (2021.09.06.).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2226>

영주시민신문 영주TV. (2019.03.20.). https://www.y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_xno=50463

Chosun Biz. (2019.17.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1934.html

| 저자 약력 |

안국진

동경대 건축학 박사, 건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나이토히로시건축가사무소 근무

E-mail : ah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일제강점기 수원관립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우화관 복원에 따른 근대건축자산 존치여부에 관한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일제강점기 수원 권업모범장 건축술에 관한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농림학교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화성 옛 물길 수변시설 복원계획」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권업모범장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